

법무상식

<http://www.jeonnam.go.kr>

C·O·N·T·E·N·T·E·S

2017년 6월 통권 제296호

새로운 판례	2
행정심판 재결사례	18
법령해석사례(법제처)	33
유용한 생활법령정보	75
법무단신	84
제·개정된 주요 법령내용	93

생활에 유익한 법무상식

새로운 판례



◆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를 해고예고제도의 적용제외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35조 제1호가 청구인의 근로의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

* 헌법재판소(사건번호 : 2016헌마640)

1. 근로의 권리에는 일할 자리에 관한 권리 뿐 아니라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도 포함되고,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침해를 막기 위한 것으로 건강한 작업환경, 정당한 보수, 합리적 근로조건의 보장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까지 이에 포함된다. 해고예고제도는 근로관계 종료 전 사용자에게 근로자에 대한 해고예고를 하게 하는 것이어서 근로조건을 이루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고 근로의 권리의 내용에 포함된다. 그런데 근로조건의 결정은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법제의 정비 등 국가의 적극적인 급부와 배려를 통하여 비로소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해고예고제도의 구체적 내용인 적용대상 근로자의 범위, 예고기간의 장단 등에 대해서는 입법형성의 재량이 인정된다.

2. 근로제공이 일시적이거나 계약기간이 짧은 경우에는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할 수 있다는 기대나 신뢰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예고는 본질상 일정기간 이상을 계속하여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근로제공을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일용근로자는 계약한 1일 단위의 근로기간이 종료되면 해고의 절차를 거칠 것도 없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그 성질상 해고예고의 예외를 인정한 것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 다만 3개월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는 임시로 고용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소득세법이나 산업재해보상

보험법의 적용과 관련하여서도 상용근로자와 동일한 취급을 받게 되므로, 근로계약의 형식 여하에 불구하고 일용근로자를 상용근로자와 동일하게 취급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3개월이라는 기준을 설정한 것이 입법재량의 범위를 현저히 이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 게다가 현재 해고예고제도는 30일 전에 예고를 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일용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근속기간이 3개월이 안 된 근로자를 해고할 때에도 이를 적용하도록 한다면 사용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하다는 점에서도 심판대상조항이 입법재량의 범위를 현저히 이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근로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

 **경찰공무원이 음주감지기로 음주 여부의 시험을 요구한 행위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소정의 ‘측정’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대법원(사건번호 : 2016도16121)

구 도로교통법(2014. 12. 30. 법률 제129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로교통법’이라 한다) 제44조 제2항에 의하여 경찰공무원이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실시하는 측정은 호흡을 채취하여 그로부터 주취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환산하는 측정 방법 즉,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으로 이해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도5377 판결, 대법원 2008. 5. 8. 선고 2008도217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경찰공무원이 음주 여부나 주취 정도를 측정하는 경우 합리적으로 필요한 한도 내에서 그 측정방법이나 측정회수에 관하여 어느 정도 재량을 갖는다(대법원 1992. 4. 28. 선고 92도220 판결 참조). 따라서 경찰공무원은 운전자의 음주 여부나 주취 정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운전자에게 음주측정기를 면전에 제시하면서 호흡을 불어넣을 것을 요구하는 것 이외에도 그 사전절차로서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검사

방법인 음주감지기에 의한 시험도 요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경찰공무원이 운전자에게 음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의 전 단계에 실시되는 음주감지기에 의한 시험을 요구하는 경우 그 시험 결과에 따라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이 예정되어 있고, 운전자가 그러한 사정을 인식하였음에도 음주감지기에 의한 시험에 불응함으로써 음주측정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음주감지기에 의한 시험을 거부한 행위도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에 응할 의사가 없음을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 ☞ 경찰공무원이 피고인에게 음주측정기가 아닌 음주감지기에 의한 시험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불응한 피고인에 대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로 기소한 사안에서,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을 요구하였는지 여부만을 기준으로 경찰공무원의 측정 요구에 불응한 것이 아니라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적절하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의 점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결론을 지지하여 상고를 기각한 사안

◆ 무단 대수선 건물에 대하여 부과하는 이행강제금 액수를 정하는 기준이 되는 시가표준액을 산정할 때 지방세법상 대수선 산출비율(0.25)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대법원(사건번호 : 2017두30764)

1. 건축법 제80조제1항제2호는, 건축물이 제1호 외의 위반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방세법」에 따라 그 건축물에 적용되는 시가표준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위반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지방세법」에 따라 그 건축물에 적용되는 시가표준액”은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 구조, 용도, 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하는데(지방세법 제4조제2항), 이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산정·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건물의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건물의 규모·형태·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그 밖의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을 적용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 위와 같은 법령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2014년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이하 ‘이 사건 조정기준’이라 한다)은, 시가표준액을 “ $\text{건물신축가격기준액} \times \text{적용지수(구조·용도·위치)} \times \text{경과연수별잔가율} \times \text{면적} \times \text{가감산특례}$ ”의 산식을 통하여 정하도록 하면서, 증·개축 건물 등에 대한 시가표준액 산출요령(이하 ‘이 사건 산출요령’이라 한다) 부분에서, “대수선 건물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해당 건물의 구조별 신축건물시가표준액에 [별표2]의 비율(이하 ‘대수선 산출비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m^2 당 시가표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별표2]에서는 연와조 건물의 대수선에 적용될 비율을 0.25로 정하고 있다.

2. 일반적으로 행정 각부의 장이 정하는 고시라 하더라도 그것이 특히 법령의 규정에서 특정 행정기관에서 법령 내용의 구체적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그 법령 내용을 보충하는 기능을 가질 경우에는 그 형식과 상관없이 근거 법령 규정과 결합하여 대외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대법원 1999. 6. 22. 선고 98두17807 판결,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4두44502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관계 법령의 내용, 형식 및 취지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조정기준의 각 규정들은 일정한 유형의 위반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시가표준액에 관하여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하여금 정하도록 한 위 건축법 및 지방세법령의 위임에 따른 것으로서 그 법령 규정의 내용을 보충하고 있으므로, 그 법령규정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지고, 그중 증·개축 건물과 대수선 건물에 관한 특례를 정한 이 사건 산출요령의 규정들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한다.

이처럼 헌법상 요구되는 명확성의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법령규정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지는 이 사건 조정기준 및 이 사건 산출요령은 대수선건물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정하면서 대수선 행위가 적법한지 여부에 따라 대수선 산출비율의 적용 여부를 구별하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무단 대수선 건물에 대하여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의 액수를 산정할 때에도 그 기준이 되는 시가표준액은 이 사건 조정기준 및 이 사건 산출요령 규정의 문언대로 대수선 산출비율을 적용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그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 대수선 산출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한 채 시가표준액을 정하여 이행강제금의 액수를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대수선 건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시가표준액을 정하는 이 사건 조정기준의 해석·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파기환송한 사례

◆ **한정후견개시심판 청구 후 본인이 후견계약을 등기한 경우 가정법원이 한정후견개시심판을 하기 위한 요건, 민법 제959조의20 제1항에서 정한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할 때’ 의 의미**
 * 대법원(사건번호 : 2017△515)

1. 민법 제959조의20제1항은 “후견계약이 등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할 때에만 임의후견인 또는 임의후견감독인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 한정후견 또는 특정후견의 심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후견계약은 본인이 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 개시의 심판을 받은 때 종료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본인이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인 경우에 가정법원은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함에 있어서 종전의 성년후견, 한정후견 또는 특정후견의 종료 심판을 하여야 한다. 다만, 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 조치의 계속이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가정법원은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민법 규정은 후견계약이 등기된 경우에는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후견계약을 우선하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할 때에 한하여 법정후견에 의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민법 제959조의 20제1항에서 후견계약의 등기 시점에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본문이 본인에 대해 이미 한정후견이 개시된 경우에는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하면서 종전 한정후견의 종료 심판을 하도록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제1항은 본인에 대해 한정후견개시심판 청구가 제기된 후 그 심판이 확정되기 전에 후견계약이 등기된 경우에도 그 적용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와 같은 경우 가정법원은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만 한정후견개시심판을 할 수 있다.

2. 민법 제959조의 20제1항에서 정하는 후견계약의 등기에 불구하고 한정후견 등의 심판을 할 수 있는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할 때’란 후견계약의 내용, 후견계약에서 정한 임의후견인이 그 임무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유가 있는지, 본인의 정신적 제약의 정도, 기타 후견계약과 본인을 둘러싼 제반 사정 등을 종합하여, 후견계약에 따른 후견이 본인의 보호에 충분하지 아니하여 법정후견에 의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 본인에 대한 한정후견개시심판 항고심 계속 중 본인이 후견계약을 등기하고

임의후견감독인 선임청구를 하였음을 밝히면서 한정후견개시심판 절차의 종단을 요청한 사안에서, 후견계약의 등기에 불구하고 한정후견을 개시하는 것이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보아 항고를 기각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하는 경우 증여의제 시기는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일임**

* 대법원 (사건번호 : 2017두32395)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는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관하여 제1항 본문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 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제3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제1항 및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 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주식 등의 소유자 명의를 실제 소유자와 다르게 기재하여 조세를 회피하려고 하였더라도 주주명부나 사원명부 그 자체가 없어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 본문을 적용할 수 없었던 문제점을 보완하여 그러한 경우에도 증여세를 과세하려는 것이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11099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으로 어떤 일자를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따른 증여의제일로 볼 것인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다. 한편 과세관청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을 과세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과세목적상 협력의무 이행의 일환으로 사업연도 중 주식 등의 변동 상황을 기록하는 문서에 불과한 것이어서, 주주권 행사 등의 기초가 되는 주주명부와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 또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는 주주명부의 명의개서일과 같이 당해 회사가 주식양도사실을 확인한 일자가 별도로 나타나 있지도 않다. 따라서 이러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비록 주식의 양도일이나 취득일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바로 그 시점에 다수의 주주와 관련된 법률관계를 처리할 목적에서 마련된 주주명부에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것과 동등한 효력을 부여할 수는 없다. 다만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이 제출되면 그때 비로소 주식 등의 변동상황이 회사를 비롯한 외부에 명백하게 공표되어 명의신탁으로 인한 증여의제 여부가 판정될 수 있는 것이므로, 그와 같이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주식의 변동사실이 외부에 분명하게 표시되었다고 볼 수 있는 위 명세서 등의 제출일을 증여세 목적에 따른 증여의제일로 보아야 한다.

- ☞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하여 명의신탁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증여의제일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기재된 주식의 양도일 또는 취득일이 아니라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일로 보아야 한다는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 **통행권 확인 등 사건에서 주위토지통행권의 인정 여부**

* 울산지방법원(사건번호 : 2015나1208)

가. 주위토지통행권의 인정여부

1)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 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도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민법 제219조 제1항).

2) 살피전대, 앞서 거시한 각 증거들, 갑 제8호증, 을 제11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갑 제6, 7, 9, 10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 제6호증의 1 내지 4의 각 영상, 제1심 법원 및 당심법원의 각 현장검증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 토지는 현재 피고 토지의 이 사건 진입로를 제외하고는 공로로 출입할 수 있는 통로가 없고, 피고가 주장하는 인접 토지 등에 대하여는 '원고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를 개설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과도한 비용을 필요로 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는 피고 토지의 이 사건 진입로에 대한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된다.

① 이 사건 진입로는 원고 토지와 피고 토지가 분할되기 전인 1988년경 개설되었고, 위 두 토지의 소유자였던 정00이 이 사건 진입로를 원고 토지 및 그 지상 주택들을 위한 진입로로 사용해온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현재 이 사건 진입로를 제외하고는 원고 토지에서 공로로 출입할 수 있는 통행로가 개설되어 있지 않다.

② 원고는 원고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이전인 2013년 9월 10일부터 울산 울주군 H에서 '0심'이라는 상호로 식품, 잡화, 주류 등 소매업을 영위해왔는데, 원고 토지를 매수한 후 그 지상 주택에서 거주하며 식품 등을 제조하여 항아리에 담아 위 사업장으로 운송하여 판매해온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가 원고 토지를 용도대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위 항아리 등을 사업장으로 운송하기

위한 자동차가 통행할 수 있는 진입로가 필요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③ 주위토지통행권은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 인정되는 것인바, 원고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적어도 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한 통로라고 할 것이므로, 설령 인접 토지에 통행로의 개설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자동차의 통행이 불가능하다면 원고 토지에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마련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④ 피고는 445-6 대지에 진입로를 개설하여 원고 토지에서 공로로 출입할 수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445-6 대지와 원고 토지 사이에는 블록 담장이 설치되어 있고 대지에는 제3자가 소유 및 거주하는 주택이 있어 자동차가 상시적으로 출입하는 통행로로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부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⑤ 또한 피고는 445-7 임야에 진입로를 개설하여 원고 토지에서 공로로 출입할 수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445-7 임야와 원고 토지는 약 3.5~4m 정도의 고도차이로 급경사를 이루고 있는데다가 철조망으로 경계가 나누어져 있어 진입로 개설이 불가능하거나, 원고 토지의 용도에 적합한 형태의 진입로를 개설하는데 과도한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주위토지통행권은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진입로에 대한 원고의 통행권이 인정되는 경우 피고의 손해가 막대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진입로가 아니라 445-6 대지 또는 445-7 임야 등 인접토지를 통해 통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이 사건 진입로는 피고가 피고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약 25년 전에 개설되어 그동안 통행로로 사용되어 온 점, ② 피고는 피고 토지에 이 사건 진입로 등 기타 I의 제한이 있다는 사정을 잘 알면서 이를

저렴한 가격(감정평가액: 9억1939만500원, 매수가격:3억7160만원)에 매수하였는바, 피고가 이 사건 진입로로 인하여 입는 손해는 이미 매수가격에 반영되었다고 봄이 타당한 점, ③ 따라서 이 사건 진입로에 대한 원고의 통행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에게 예상치 못한 새로운 손해가 발생된다거나 손해가 확대될 위험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④ 그러나 445-6 대지 또는 445-7 임야 등 인접 토지에 새로운 진입로를 개설하는 경우, 그 토지의 소유자들에게 예상치 못한 새로운 손해가 발생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인접 토지에 새로운 진입로를 개설하는 것이 피고 및 인접 토지 소유자들의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지방의회의원의 업무추진비 사용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공직선거법위반죄의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 대법원(사건번호 : 2015도6008)

지방의회의원이 음식물 등 제공에 사용한 돈이 지방의회의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업무추진비에서 예산집행절차를 거쳐 지급된 경우, 그 지급이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가)목에서 정한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행위’ 또는 (나)목에서 정한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원칙적으로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없다.

다만, 지방의회의원의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규정을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하였던 기간 동안 지방의회의원이 업무추진비를 사용하여 음식물 등을 제공한 행위가 지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추진비의 사용처가 관련 법령에서 정한 지방의회의원의 직무수행에 포함되는지 여부, 피고인들이 내부적인 사무처리 준칙상 그 회계처리에 유추 적용되었다고 주장하는 규정에 의하면 그와 같은 업무추진비의 사용이 정당하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 형식적으로 지방의회의원의 직무에 속하는 업무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규정을 유추적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실제로는 그 직무수행과 관련 없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지출하거나 또는 그 직무수행과 관련된다고 하더라도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 지나치게 과다하게 지출한 것인지 여부 등을 구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되,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에 해당하는 금품 등 제공행위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가 몰각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 ☞ 지방의회의원들이 업무추진비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여 공직선거법위반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근거 법령이나 조례가 없다면 원칙적으로 위법하지만, 지방의회의원의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이 미비하여 지방자치단체장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하는 내부적인 사무처리 준칙이 있었고, 그 직무에 속하는 사용처에 사무처리 준칙에 부합하도록 업무추진비를 사용하였으며,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것이라거나 지나치게 과다한 경우가 아닌 예외적인 경우에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아 위법성이 없다고 볼 수 있는데도, 원심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법원에 환송한 사안임

◆ **상법 제374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성립된 매매계약에 대하여 관리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9조 제1항에 따른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대법원(사건번호 : 2015다6517)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119조 제1항은 “쌍무계약에 관하여 채무자와 그 상대방이 모두 회생절차개시 당시에 아직 그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리인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채무자의 채무를 이행하고 상대방의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21조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제 또는 해지의 경우 채무자가 받은 반대급부가 채무자의 재산 중에 현존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현존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그 가액의 상환에 관하여 공익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들은 쌍방의 채무가 법률적·경제적으로 상호 관련성을 가지고 원칙적으로 서로 담보의 기능을 하고 있는 쌍무계약에 관하여 쌍방 당사자가 아직 그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 당사자인 일방의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관리인에게 그 계약을 해제할 것인가 또는 상대방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것인가의 선택권을 부여함으로써 회생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함과 아울러, 관리인이 계약의 해제를 선택한 경우 이에 따른 원상회복의무도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양 당사자 사이에 형평을 유지하기 위한 취지에서 만들어진 쌍무계약의 통칙이다(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60559 판결, 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1다24174, 24181 판결,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3다20414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상법 제374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업양도 등에 대한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성립한 주식매매계약에 관하여 채무자회생법 제119조 제1항의 적용을 제외하는 취지의 규정이 없는 이상, 쌍무계약인 위 주식매매계약에 관하여 회사와 주주가 모두 그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회사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면, 관리인은 채무자회생법 제119조제1항에 따라 위 주식매매계약을 해제하거나 회사의 채무를 이행하고 주주의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 ☞ 상법 제374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라 주주와 회사 사이에 주식매매계약이 체결된 후 그 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자 그 관리인이 채무자회생법 제119조 제1항에 따라 위 주식매매계약을 해제한 사안에서, 쌍방 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채무자회생법의 규정들은 쌍무계약의 통칙이므로 위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성립한 주식매매계약에 관하여 채무자회생법 제119조 제1항의 적용을 제외하는 취지의 규정이 없는 이상 관리인이 위 규정에 따라 위 주식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상고기각한 사례임.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되는 은닉행위를 위해 피고인이 교부받은 범죄수익 등인 수표가 불법원인급여물에 해당하여 이를 임의로 소비한 행위가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 것인지 여부
* 대법원(사건번호 : 2016도18035)

민법 제746조가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뜻은, 그러한 급여를 한 사람은 그 원인행위가 법률상 무효임을 내세워 상대방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음은 물론 급여한 물건의 소유권이 자기에게 있다고 하여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도 할 수 없다는 데 있으므로, 결국 그 물건의 소유권은 급여를 받은 상대방에게 귀속된다(대법원 1979. 11. 13. 선고 79다483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9. 6. 11. 선고 99도275 판결).

한편 민법 제746조에서 말하는 ‘불법’이 있다고 하려면, 급여의 원인 된 행위가 그 내용이나 성격 또는 목적이나 연유 등으로 볼 때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될 뿐 아니라 반사회성·반윤리성·반도덕성이 현저하거나, 급여가 강행법규를 위반하여 이루어졌지만 이를 반환하게 하는 것이 오히려 규범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다 79887, 79894 판결 참조)

☞ 상기 법리를 전제로, ① 피고인이 이 사건 수표를 교부받은 원인행위는 이를 현금으로 교환해 주고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으로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형사 처벌되는 행위, 즉 거기에서 정한 범죄수익 등에 해당하는 이 사건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하여 그 특정, 추적 또는 발견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은닉행위를 법률행위의 내용 및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고, ② 한편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은 국제적 기준에 맞는 자금세탁방지 제도를 마련하고 범죄수익의 몰수·추징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특정범죄를 조장하는 경제적 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하여 건전한 사회질서의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로서, 특정범죄를 직접 처벌하는 형법 등을 보충함으로써 중대범죄를 억제하기 위한 형사법 질서의 중요한 일부를 이루고 있는 것에 비추어,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의하여 직접 처벌되는 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계약은 그 자체로 반사회성이 현저하며, ③ 뿐만 아니라 형벌법규에서 금지하고 있는 자금세탁행위를 목적으로 교부된 범죄수익 등을 특정범죄를 범한 자가 다시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한다면, 그 범죄자로서는 교부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더라도 언제든지 범죄수익을 회수할 수 있게 되어 자금세탁행위가 조장될 수 있으므로, 범죄수익의 은닉이나 가장, 수수 등의 행위를 억지하고자 하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의 입법목적에도 배치되므로, ④ 결국 피고인이 범죄수익 등의 은닉범행 등을 위해 교부받은 이 사건 수표는 불법의 원인으로 급여한 물건에 해당하여 그 소유권이 피고인에게 귀속되고, 따라서 피고인이 그중 교환하지 못한 수표와 이미 교환한 현금을 임의로 소비하였다고 하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특정경제범죄법(횡령)위반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여 추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안임.

◆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사건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서술하는 형태로
표현되어 있더라도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대법원(사건번호 : 2016도19255)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을 비평하면서 사용한 표현이 겉으로 보기에 증거에 의해 입증 가능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서술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글의 집필의도, 논리적 흐름, 서술체계 및 전개방식, 해당 글과 비평의 대상이 된 말 또는 글의 전체적인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평균적인 독자의 관점에서 문제된 부분이 실제로는 비평자의 주관적 의견에 해당하고, 다만 비평자가 자신의 의견을 강조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와 같은 표현을 사용한 것이라고 이해된다면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재야사학자인 피고인이 자신의 저서에서 K대학교 명예교수의 저서를 비평하면서 겉으로 보기에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적시하는 것과 같은 표현을 사용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의 주장을 함축적이고 단정적인 문장으로 서술한 것으로서 주관적 의견에 해당하고, 다만 피고인이 위 의견을 강조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와 같은 표현을 사용한 것이라고 이해된다는 이유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상고기각한 사안임.

생활에 유익한 법무상식

행정심판 재결사례



【2016-394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사업정지(4개월)처분 취소청구】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6. 12. 8. 청구인에게 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사업정지 4개월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00시 00로 00번지 소재에 ‘00주유소’라는 상호로 석유판매사업(주유소)을 운영하는 자로서, 2016. 10. 26. 이동판매 차량(83노0000)을 이용하여 화물트럭(84무0000)에 가짜석유제품을 주유하다가 적발되어 2016. 12. 8. 피청구인이 사업정지 4개월 처분을 하자, 이 사건 가짜석유와 주유는 고의로 제조한 것이 아니고 화물차 운전자의 간곡한 부탁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발생한 사안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건임

2.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6. 12. 8. 청구인에게 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사업정지 4개월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3.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청구인

- 1) 청구인은 2016. 10. 26. 00시청으로부터 등유 공급요청을 받고 유류 이동주유차량에 경유와 등유를 각각 분리적재하고 운전자 이00(청구인 남편)로 하여금 등유를 배달·공급하려는 상황에서, 00시 00동 공사현장의 장비업자(청구 외 박00)로부터 중장비(포크레인) 급유 요청을 받고 등유 배달·공급 전에 공사현장을 찾아가 장비업자의 중장비에 경유를 주유한 후 장비업자의 간곡한 부탁으로 이동판매 주유가 금지된 화물자동차(중장비를 싣고 다니는 5톤 차량)에도 주유호스에 남아있는 경유 약 50리터만 주유하려다 밸브조작 실수로 등유 약 10리터가 섞여 주유되어 이 사건이 발생 하였다고 가짜석유 주유·판매는 고의가 없는 단순 과실이라고 주장한다.
- 2) 이 사건 석유판매업 사업정지 처분에 대해 청구인은 자동차 경유에 등유를 혼합한 가짜석유제품을 고의로 판매한 사실이 없고, 과실로 가짜석유 제품을 판매한 것뿐이므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9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사실이 없고, 나아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제1호가 규정하고 있는 영업범위나 영업방법을 고의로 위반하고자 이동주유차량을 이용하여 석유제품을 판매한 사실도 없으므로 이러한 규정들을 위반한 사실이 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나. 피청구인

- 1) 이동주유차량으로 화물자동차에 주유하는 것은 석유판매업(주유소, 일반 판매소로 구분)별 영업 범위나 영업방법을 위반하여 석유제품을 공급하는 행위 위반으로서 법 제39조에서 정한 행위금지 사항 중 석유 연료의 유통 질서를 해치는 행위로서 명백한 위법행위에 해당하고,
- 2) 이동주유차량을 이용하여 화물자동차에 주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석유 관리원 직원에게 적발된 점과 등유밸브를 개방·조작하여 주유한 것은 위반 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정될 뿐만 아니라, 가격이 저렴한 등유를 자동차용 경유로 주유할 의도가 명백하였다 할 것이고, 청구인은 2015.

1. 15. 등유를 자동차용 연료로 판매하고 영업범위 및 방법을 위반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볼 때 재차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석유판매업을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 또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관계법령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9조, 제39조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43조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16조 【별표1】

5. 판단

가. 사건경위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증거서면 등 기타 관련 자료들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2015. 1. 15. 청구인은 이동주유차량을 이용하여 트레일러에 등유를 차량용 연료로 주유·판매하다가 2015. 3. 13. 피청구인으로부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과징금(115만원)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2) 2016. 10. 26. 청구인은 운전자 이00(청구인 남편)로 하여금 이동주유차량(83노0000)을 이용하여 00시 00동 공사현장에서 장비업자(청구외 박00)의 5톤 화물차량(84무0000)에 이동주유차량의 등유밸브를 개방한 채 유류를 공급한 사실이 있다.

3) 2016. 10. 26. 한국석유관리원(호남본부)은 00시 00동 공사현장에서 이 사건 이동주유차량(83노0000)의 ①경유탱크, ②등유탱크, ③주유기, ④청구외 박00의 5톤 화물자동차 연료탱크 등 총 네 곳에서 석유 품질 및 유통검사를 위해 시료를 채취하였다.

4) 2016. 11. 7. 한국석유관리원(호남본부)은 피청구인에게 위 채취한 시료의 품질, 유통검사 결과를 다음과 같이 송부하였다.

□ 석유판매업소(품질, 유통검사 결과)

업소명	대표자	주소	시료채취일	제품명	시료번호	판정
00 주유소	김00	전남 00시 00로 00	2016. 10. 26.	자동차용경유	1	품질적합
				등유	2	품질적합
				자동차용경유	3	가짜석유제품*

* 시료번호 3은 자동차용경유에 다른 석유제품(등유 등)이 약 95% 혼합된 제품으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2조 제10호에서 규정한 가짜 석유제품임

업소명	대표자	주소	점검일	점검내용	점검결과
대 영 주유소	김00	전남 00시 00로 00	2016. 10. 26.	영업범위 및 영업방법 준수 여부 점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제1호 위반**

** 00주유소는 이동주유차량(83노0000)을 이용하여 화물트럭(84무0000)에 가짜석유제품을 주유·판매하였으므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제1호 위반임

□ 사용자

차량번호	사용자	주소	점검일	제품명	시료번호	점검결과
84무0000	박00	전남 00군 00면 00리 000	2016. 10. 26.	자동차용 경유	4	가짜석유제품***

*** 시료번호 4는 자동차용경유에 다른 석유제품(등유 등)이 약 20% 혼합된 제품으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 제10호에서 규정한 가짜 석유제품임

5) 2016. 11. 14.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을 사전 통보하였고, 2016. 11. 30.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의견진술서를 제출하였다.

6) 2016. 12. 08.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사업정지 4개월)을 하였고, 청구인은 2016. 12. 30. 전라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행정심판 청구와 집행정지를 신청하였다.

7) 전라남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이 사건 사업정지(4월) 처분의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하였다.

8) 2017. 4. 13. 광주지방검찰청 00지청장은 이 사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처분하였다.

- 사건번호 : 2017년 형제0000호
- 피의자명 : 김 00
- 처분결과 : 구약식 벌금 200만원

나.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1) 판례(대법원 2012.5.10. 선고 2012두1297 판결)에 따르면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는바, 이 사건 청구인의 의도적 행위인지와 무관하게 한국석유관리원의 품질검사 결과에서 자동차용 경유에 다른 석유제품(등유 등)이 약 95% 혼합된 가짜석유제품이라는 결과와, 이동주유차량을 이용하여 화물트럭에 주유·판매하였다는 객관적 사실에 따라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2) 또한 청구인은 이 사건이 과실로 경유와 등유가 혼합되었고, 영업방법 등 위반은 5톤 화물차 운전자(청구외 박00)의 간절한 부탁으로 발생한 사건으로서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석유판매업자로서 건전한 석유유통질서를 해치지 않도록 엄격한 행위의 금지사항을 준수해야할 의무가 있음을 볼 때, 화물차 운전자의 부탁만으로 석유판매업자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부당한 처분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할 것이다.

3) 이 사건 위반경위나 위반의 정도, 행정처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과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 등을 따져 처분의 적정성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건전한 석유유통질서를 해치지 않도록 면밀한 석유제품관리로 가짜석유가 제조, 반입, 저장, 판매가 되지 않도록 고의성의 유무에 상관없이 철저한 관리와 확인 및 검증의 책임이 있다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은 인정된 사실과 같이 ①이 사건 이동주유차량의 등유밸브를 개방·조작하여 화물차에 주유한 위반행위는 이 사건 “가짜석유”의 발단이 된 행위로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정할 수 있는 점, ②이 사건은 가짜석유 주유·판매와 영업범위·방법 위반으로서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가중처분의 대상이 되는 점, ③이 사건 경유에 등유가 각각 98%, 20% 혼합되었다는 사실은 결코 경미한 사항으로 볼 수 없는 점, ④광주지방검찰청 00지청장은 이 사건 피의사건에 관하여 청구인에게 구약식 벌금 200만원을 처분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석유유통질서 확립의 공익목적과 처벌의 필요성에 비하여 청구인이 입게 되는 손해가 막대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할 것이다.

6.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2017-007 영유아보육법 위반 어린이집 운영정지(1년) 및 보조금(520만원)환수처분 취소 청구】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1) 피청구인이 2016. 10. 21. 청구인 00어린이집(대표자 000)에게 한 운영정지 1년 및 보조금 520만원 환수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피청구인이 2016. 10. 21. 청구인 00에게 한 자격정지 1년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 00어린이집 대표 000(이하 ‘청구인 000’이라 한다)은 2005. 10. 11. 부터 00시 00길 00에서 00어린이집의 대표자이며 통학차량을 직접 운전하였던 자이고, 청구인 00은 2014. 1. 10.부터 이 사건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재직하던 자이다.

청구인 000은 2016. 8. 10. 09:10경 통학차량 운행 중 원생을 치어 사망케 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이 사건 조사 중 2014. 6. 통학차량의 소유자가 변경되어 어린이통학버스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기존 청구인 명의의 어린이통학버스 신고필증으로 보조금을 수령한 사실을 확인하고, 피청구인은 2016. 10. 21. 청구인 000에게 00어린이집 운영정지 1년 및 소유자가 변경된 시점부터 26개월간 부정수급한 보조금 520만원 환수 처분을 하였다.

청구인 00은 청구인 000의 원생 사망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업무수행 중 중대한 과실로 영유아에게 중대한 생명·신체 또는 정신적 손해를 입힌 사실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16. 10. 21. 청구인 00에게 원장 자격정지 1년 처분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들은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한 사건임

2. 청구취지

- 1) 피청구인이 2016. 10. 21. 청구인 00어린이집(대표자 000)에게 한 운영정지 1년 및 보조금 520만원 환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2) 피청구인이 2016. 10. 21. 청구인 00에게 한 자격정지 1년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3. 당사자 주장요지

가. 청 구 인

- 1) 피청구인이 2016.10.21. 청구인 000에게 한 운영정지 1년 및 보조금 5,200,000원의 환수처분은 청구인 000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영유아보육법 제40조 제3호)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고 할 수 없고, 설령 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고,
- 2) 피청구인이 2016.10.21. 청구인 00에게 한 자격정지 1년 처분은 청구인 00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영유아에게 손해를 입힌 것이 아니므로 영유아보육법 제46조 제1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위법한 처분이므로 위 각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피청구인

이 사건은 청구인이 영유아보육법과 지침을 명백하게 위반하여 발생되었으며, 이 사건 행정처분은 관련법령에 의하여 적법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처분한 사항이므로 영유아보육법의 처분 대상이 명확하며, 청구인 본인도 영유아보육법을 숙지하지 못하여 위반된 사항에 대하여는 인정하면서도 단지 행정처분을 면하기 위한 행정심판 청구가 명백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4. 관계법령

- 1) 「영유아보육법」 제40조, 45조, 46조, 시행규칙 제23조, 38조, 39조 별표8~10
- 2) 「도로교통법」 제52조(어린이통학버스 신고등),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5. 판 단

가. 사건경위

- 1) 청구인 어린이집(대표자 000)은 2010. 12. 23. 대표자 000 명의의 스타렉스 차량을 00경찰서에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하고, 피청구인으로부터 보조금 월 20만원을 이 사건 사고 당시까지 수령하였다. 그 후 2014. 6. 26. 대표자의 아들인 강준수 명의로 차량 소유 명의를 변경하였으나 별도의 어린이통학버스 변경신고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
- 2) 청구인 00은 2014. 1. 10.부터 사고 당시까지 이 사건 어린이집 원장으로 재직하였고, 2016. 8. 10. 어린이집 대표 000이 운전하던 차량으로 등원하던 원생이 같은 차량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 ※ 광주지검 00지청장은 2017. 1. 6. 운전자 000(청구인), 보육교사 000, 000에 대하여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에 대하여 불구속 기소하였고, 원장 00(청구인)에 대하여는 혐의없음 처분 하였다.
- 3) 피청구인은 2016. 10. 21. 위 사망사건을 조사 중 통학차량의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사항과 소유자가 상이함에도 통학차량 보조금을 거짓으로 수령한 사실을 확인하고 아래와 같은 처분을 하였으며, 원장인 청구인 00에게는 이 사망사건과 관련하여 운영책임 등에 대해 아래와 같은 처분을 하였다.

처분대상자	위반행위	처분내용	비고
00어린이집 (대표자 000)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함	·운영정지 1년 (2016.11.1. ~2017.10.31.) ·보조금 환수 520만원	
원장 00	영유아에게 중대한 생명·신체 또는 정신적 손해를 입힌 경우	·원장 자격정지 1년 (2016.11.1. ~2017.10.31.)	

4) 이에 청구인들은 2017. 1. 10.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5) 피청구인은 2017. 3. 13. 청구인 00(원장)에게 다음과 같은 사유로 행정 처분 사유 추가통지를 하였다.

- 추가 사유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음

※ 자격정지 기간(1년)은 변동 없음

나.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도로교통법」 제52조제1항은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려는 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고 하며, 같은법 제3조는 어린이통학버스로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로 한정한다. 이 경우 그 자동차는 도색·표지, 보험가입, 소유 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4호는 「자동차등록령」 제8조에 따른 등록원부에 법 제2조 제23호에 따른 유치원, 학교, 어린이집, 학원, 체육시설의 인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 또는 유치원, 학교, 어린이집, 학원 또는 체육시설의 장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가목 단서에 따라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와 운송계약을 맺은 자동차일 것으로 어린이통학버스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영유아보육법 제45조 제1항

제1호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流用)한 경우 어린이집 운영정지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하면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제1항 [별표9]에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거짓 등으로 수령한 보조금이 5백만원이상 1천만원 미만인 경우 1차 위반시 운영정지 1년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영유아보육법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제1항은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운영기준에 따라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세부운영기준에 대하여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별표8] 3.라. 차량안전관리 제1호는 차량은 9인승 이상 자동차로 한정하며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라 미리 어린이통학버스로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신고필증을 발급받아야 한다고 하고 제7호는 등원·퇴원 차량 운행 시 운전기사과 보육교사 등 차량에 동승하는 사람은 영유아가 안전하게 담당 보육교사나 부모 등 보호자에게 인도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고, 모든 영유아가 안전하게 인도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영유아보육법 제46조 1호 가항은 어린이집의 원장이 업무 수행 중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영유아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로서 영유아의 생명을 해친 경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 [별표10] 위 사항에 대하여 1차 위반시 자격정지 1년을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 000에 대한 보조금 거짓수령에 의한 환수 처분 및 이에 따른 운영정지 1년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청구인이 경찰서 등 관련기관의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에 대한 홍보와 단속에도 불구하고 청구인 명의가 아닌 차량에 대하여 청구인 명의로 신고한 신고필증을 이용해 어린이통학차량 보조금을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피청구인의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②차량명의 변경부터 적발까지 부정 수령한

보조금이 520만원으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따른 운영정지 1년 처분이 적법한 점 등을 고려하면 부정수령한 보조금 520만원에 대한 환수처분 및 이에 따른 운영정지 1년 처분은 위법·부당함이 없다할 것이다.

2) 청구인 00(원장)은 영유아의 중대한 생명의 손해를 입은 사실에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청구인에 대한 원장 자격정지 1년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광주지검00지청장은 청구인에 대한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과실치사에 대하여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②청구인은 어린이집의 운영을 총괄·관리하는 자로서 영유아보육법 제24조 및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차량관리를 안전하게 할 의무가 있음에도, 등원중 청구인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의하여 원생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가해 차량이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른 어린이 통학버스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차량이었음에도 약 2년간 운행하게 한 청구인에게 어린이집 운영을 총괄하는 원장으로서의 차량안전관리를 해태한 중대한 과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할 것이다. ③또한, 청구인은 영유아를 돌보는 어린이집 원장으로 영유아보육법이 정한 영유아의 전인격적 성장이라는 입법목적을 고려하면 형법상의 과실 이외에 행정적인 과실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할 것이다.

6.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2017-062 묘지 이전명령 취소청구】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6. 12. 20. 청구인에게 한 묘지 이전명령은 이를 취소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3. 11. 23. 00군 00이면 00리 산 00 번지(이하 ‘이 사건 묘지’라 한다.)에 분묘 9기를 설치한 자로, 피청구인이 2016. 11. 30. 이 사건 묘지가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묘지임을 확인하고 같은 해 12. 20. 이 사건 묘지의 이전명령을 하자, 청구인은 실제 공공복리에 위반됨이 없다며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 청구한 사건임

2.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6. 12. 20. 청구인에게 한 묘지 이전명령은 이를 취소한다.

3. 당사자 주장요지

가. 청구인

청구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묘지를 설치한 사실은 인정하나, 분묘 정비 결과 묘역의 수와 면적이 기존 묘역보다 줄었으며, 이 사건 분묘가 공공복리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고, 분묘정비로 인해 오히려 공공복리 증진에 부합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피청구인

본 건의 경우에는 사설묘지를 설치하려는 경우로, 필수적으로 관할 지방자치 단체장의 허가를 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그러한 절차 자체를 밟지 않았고, 원칙적으로 사설묘지 설치 허가신청을 하고 관할관청의 허가가 나오면

그에 수반하여 사실묘지 조성절차가 진행되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허가신청 자체를 하지 않았으므로 허가신청에 따른 관할관청의 판단이 재량 행위냐 아니냐를 논할 필요도 없이 본 건은 장사법 위반 사항으로 그에 따른 장사법 제31조에 의거한 묘지 이전명령은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행정처분이라고 주장한다.

4. 관계법령

-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 제31조
- 「장사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

5. 판 단

가. 사건경위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증거서면 등 기타 관련 자료들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청구인은 2013. 11. 23. 이 사건 토지에 다음과 같이 종중묘지를 설치하였다.

- 장소 : 00군 00이면 00리 산 00번지
- 토지소유자 : 하00(신고인 하*의 조부, 미등기 임야)
- 분묘수 : 9기(23~25대 각 1기, 28~31대 각 1기, 32대 2기(청구인 부 포함))
- 설치면적 : 약 495㎡(추정)

※ 이 사건 묘지 설치 전 3기의 분묘가 존재(청구인 주장)

2) 청구외 하*는 2016. 11. 23. 이 사건 묘지가 불법으로 조성되었다며 피청구인에게 민원을 제기하였고, 피청구인은 같은 달 30. 허가를 받지 않고 종중묘지를 조성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3) 피청구인은 2016. 11. 30. 이 사건 처분의 사전 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같은 해 12. 14. 사전통지에 따른 의견 제출을 하였다.

4) 피청구인은 2016. 12. 20. 이 사건 처분(2017. 6. 30. 까지 이전)을 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2017. 3. 3.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장사법」 제14조 제3항은 가족묘지, 종중·문중묘지를 설치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묘지를 관할하는 시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1조는 시장 등은 사설묘지의 연고자 또는 설치·조성자가 위 법 제14조 제3항을 위반하여 사설묘지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 연고자 또는 설치·조성자에게 묘지를 이전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 장사법 제14조는 종중묘지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 설치하도록 규정함에도, 청구인이 2013. 11. 경에 종중묘지를 설치하였고, 이러한 사실은 묘지내 지석 및 청구인 진술 등에 의해 확인되어 청구인이 장사법 제14조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명백한 점, ② 가사, 이 사건 묘지가 주거밀집지역(00마을 68세대 128명 거주, 직선거리 293m)으로부터 가시되지 않는 등 그 설치가 가능한 지역이라 하더라도, 허가신청 없이 설치한 묘지에 대하여 사후에 허가를 하는 것은 장사법에서 정한 사설묘지 사전허가제를 와해할 우려가 큰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함이 없다 할 것이다.

6.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생활에 유익한 법무상식

법령해석사례(법제처)



사 례 1

병무청 - 의사가 「의료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의원 개설 신고하고 의료 및 보건지도를 할 수 있는 의료업은 「병역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제한되는 관허업에 포함되는지(「병역법」 제76조 등 관련)

● 질의요지

「병역법」 제76조제1항에서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고용주는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기피하고 있는 사람(제1호), 징집·소집을 기피하고 있는 사람(제2호), 군복무 및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이탈하고 있는 사람(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병역의무 불이행자”라 함)을 공무원이나 임직원으로 임용하거나 채용할 수 없고, 재직 중인 경우에는 해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병역의무 불이행자에 대하여는 각종 관허업(官許業)의 특허·허가·인가·면허·등록 또는 지정 등(이하 “특허등”이라 함)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미 이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의료법」 제33조제2항 후단 및 제1호에서는 의사는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 또는 의원을 개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의원을 개설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함)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의료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의사가 의원 개설 신고를 하여야 하는 의료업이 「병역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제한되는 관허업에 포함되는지?

● 회 답

「의료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의사가 의원 개설 신고를 하여야 하는 의료업은 「병역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제한되는 관허업에 포함됩니다.

● 이 유

「병역법」 제76조제1항에서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고용주는 병역의무 불이행자를 공무원이나 임직원으로 임용하거나 채용할 수 없고, 재직 중인 경우에는 해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병역의무 불이행자에 대하여는 각종 관허업의 특허등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미 이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의료법」 제33조제2항 후단 및 제1호에서는 의사는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 또는 의원을 개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의원을 개설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의료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의사가 의원 개설 신고를 하여야 하는 의료업이 「병역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제한되는 관허업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병역법」 제76조제2항에서는 병역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각종 관허업의 특허등을 제한하고 있는바, 같은 항의 입법 취지는 병역의무 불이행자가 행정청의 일정한 행정행위가 필요한 사업을 하려는 경우 그 행정행위를 제한함으로써 병역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담보하려는 것이고(1973. 1. 30. 법률 제2454호로 일부개정되어 1973. 3. 2. 시행된 「병역법」 의안원문 참조), 일반적으로 법령에서 하나 또는 수 개의 사항을 열거하고 그 뒤에 “등”을 사용한 경우 열거된 사항은 예시 사항으로서 “등” 앞에 나열된 특허·허가 등과 유사한 사항이 더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법제처 2014. 10. 10. 회신 14-0498 해석례 참조), 같은 항에 따라 제한되는 관허업은 행정청의 특허·허가·인가·면허·등록·지정이 필요한 사업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그 관허업의 범위에는 상대방이 법령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신청을 하여야 하고 행정청의 특허등에 준하는 행정행위가 필요한 사업도 포함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의료법」 제33조제3항에서는 의사가 의원을 개설하려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시장등은 의원 개설 신고서가 제출되면 그 신고가 형식적으로 적법한지 여부뿐만 아니라 의사가 「의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료인으로서의 자격을 갖추었는지 여부, 「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 별표 3 및 별표 4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별 시설 기준 및 시설규격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및 별표 5에 따른 의료인의 정원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심사할 수 있으며(서울행정법원 2001. 8. 8. 선고 2001구15886 판결례 참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2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에 따라 의료시설이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을 갖추었는지

여부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1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의료인의 성범죄 경력을 확인하여야 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의료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의사가 의원 개설 신고를 하여야 하는 의료업은 시장등이 법령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 사업이라고 할 것이므로, 의원의 개설 신고는 행정청의 행정행위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등” 앞에 나열된 특허등과 달리 볼 이유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병역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각종 관허업의 특허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병역기피 또는 군복무 및 사회복무요원 등의 복무이탈 사실이 없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확인 방법으로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병적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제1호), 같은 항제1호에 따른 사실 확인을 할 수 없거나 제1호에 따른 사실 확인에 대하여 각종 관허업의 특허등을 받으려는 사람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장에 대한 병적조회 또는 병역의무자의 병역증·전역증 또는 병적증명서의 제출(제2호)을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부여된 병역기피 등 사실 확인의무와 앞에서 살펴본 의원 개설 신고의 성격 등을 종합해 볼 때, 시장등은 「의료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의사로부터 의원 개설 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 「병역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라 의사가 병역기피 또는 군복무 및 사회복무요원 등의 복무를 이탈한 사실이 없는지 여부도 확인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의료업은 「병역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제한되는 관허업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병역의무 불이행자인 의사가 「의료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의원 개설 신고를 하는 경우에 「병역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의원의 개설이 제한되지 않는다고 볼 경우, ① 「의료법」 제33조제4항에서는 종합병원, 병원 또는 요양병원을 개설하려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병역의무

불이행자인 의사가 종합병원, 병원 또는 요양병원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병역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종합병원등의 개설이 제한되므로 의료기관의 개설과 관련하여 병역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가 그가 개설하려는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② 같은 조 제1항에 따르면 병역의무 불이행자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 기업체에 채용될 수 없거나 채용되었더라도 해직되어야 할 것이므로, 병역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가 의원을 개설하려는지 아니면 의료기관에 채용되려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의료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의사가 의원 개설 신고를 하여야 하는 의료업은 「병역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제한되는 관허업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의견

「병역법」 제76조제2항에서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병역의무 불이행자에 대하여는 각종 관허업의 특허·허가·인가·면허·등록 또는 지정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미 이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한되는 관허업의 범위에 특허·허가·인가·면허·등록 또는 지정이 필요한 사업 외에 그 밖의 어떠한 사업이 포함될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두고 있지 않아 해석상 논란의 소지가 있는바, 제한되는 관허업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 례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지방자치단체가 식품등 기부 및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위하여 설치하고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시설이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 포함되는지 여부(「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 등 관련)

● 질의요지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식품기부법”이라 함) 제7조제1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식품 및 생활용품(이하 “식품등”이라 함) 기부 및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지원할 목적으로 제공된 식품등(이하 “기부식품등”이라 함) 제공 사업을 지원·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너머목에서는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개별 법률의 하나로 식품기부법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호에서는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조제1항에서는 사회복지사업의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하여 같은 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자치단체가 식품기부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등 기부 및 기부식품등 제공 사업을 하는 시설(이하 “식품등기부시설”이라 함)을 설치하고 그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 그 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 해당하는지?

● 회 답

지방자치단체가 식품기부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등기부시설을 설치하고 그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 그 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 시설에 해당합니다.

● 이 유

식품기부법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서는 “사업자”란 기부식품등을 이용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제공하는 자 중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기부식품등 제공 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제1항에서는 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같음)에게 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규모 및 범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조제1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식품등 기부 및 기부식품등 제공 사업을 지원·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는 “사회복지사업”이란 같은 호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호·선도(善導)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在家福祉),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호 너목에서는 사회복지 사업에 관한 개별 법률의 하나로 식품기부법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호에서는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제1항에서는 사회복지사업의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하여 같은 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식품기부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등기부시설을 설치하고 그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 그 시설이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령을 해석할 때에는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너목에서는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개별 법률의 하나로 식품기부법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호에서는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식품기부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 등 기부 및 기부식품등을 제공하는 사업은 사회복지사업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그러한 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05. 9. 15. 회신 05-0020 해석례 참조).

그리고, 「사회복지사업법」 제1조에서는 같은 법은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제1항에서는 사회복지사업의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하여 같은 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은 사회

복지에 관한 기본법적 지위에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법제처 2014. 11. 14. 회신 14-0556 해석례 참조), 식품 등 기부 및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식품기부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이 적용되고,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같은 법 제1조 및 제3조제1항의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 관한 규정을 식품등기부시설에 적용하는 것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대한 규제로 작용하여 민간부문에서의 자율적인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식품기부법의 입법 취지에 어긋날 수 있으므로, 식품등기부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식품기부법 제4조에 따른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민간부문에서 자율적으로 활성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더라도, 그 사업이 사회복지의 증진 및 사회공동체문화의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식품기부법 제1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운영비 또는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제7조제2항),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에 해당하는 등 그 공익적 성격에 비추어 볼 때,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관하여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 관한 규정을 식품기부법에 따른 식품등기부시설에 적용할 경우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대한 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이유로 식품등기부시설을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식품기부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등기부시설을 설치하고 그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 그 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사 례 3

국토교통부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의3 제1호나
목에 따른 보수교육의 대상자인 “법령위반 운수종사자”의 범위(「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의3 등 관련)

● 질의요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 함)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는 운수종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외함) 및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행위(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외함)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여객자동차법 시행령”이라 함) 제16조의3에서는 여객자동차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각각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이라 함) 별표 4의3 제1호나목에서는 보수교육 대상자의 하나로 “법령위반 운수종사자”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호 비고 제3호에서는 여객자동차법 제26조제1항의 운수종사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를 법령위반 운수종사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택시발전법”이라 함) 제16조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는 택시운수종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 및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별표 4의3 제1호나목에 따른 보수교육의 대상자인 “법령위반 운수종사자”에 택시발전법 제1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택시운수종사자가 포함되는지?

● 회 답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별표 4의3 제1호나목에 따른 보수교육의 대상자인 “법령위반 운수종사자”에 택시발전법 제1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택시운수종사자도 포함됩니다.

● 이 유

여객자동차법 제3조제1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호다목 및 라목에서는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한 종류인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으로 규정하고 있고, 여객자동차법 제3조의2제2항제6호에서는 운수종사자를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갖추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6조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는 운수종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외함) 및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행위(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

사업은 제외함)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3에서는 여객자동차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각각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객자동차법 제94조제3항제4호에서는 같은 법 제2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객자동차법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운수종사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전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 각 호에서는 여객자동차법 제25조에 따라 운수종사자가 받아야 하는 교육의 종류로 신규교육(제1호), 보수교육(제2호), 수시교육(제3호)을 규정하고 있으며,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제58조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대상 및 내용 등은 별표 4의3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칙 별표 4의3 제1호나목에서는 보수교육의 대상자로 “법령위반 운수종사자”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호 비고 제3호에서는 법령위반 운수종사자는 여객자동차법 제26조제1항의 운수종사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개인택시 운송사업자는 같은 법 제21조제5항을 위반하여 과징금 또는 사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를 포함함)와 같은 규칙 제49조제3항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되어 특별검사 대상이 된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택시발전법 제2조제1호에서는 “택시운송사업”이란 여객자동차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일반택시운송사업(가목)과 개인택시운송사업(나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택시발전법 제2조제4호에서는 “택시운수종사자”란 여객자동차법 제24조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갖추고 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택시발전법 제4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은 택시운송사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제2항에서는 택시운송사업 및 택시운수종사자에 관하여 같은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여객자동차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는 택시운수종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 및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3조제2항제1호에서는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택시운수종사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에게는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별표 4의3 제1호나목에 따른 보수교육의 대상자인 “법령위반 운수종사자”에 택시발전법 제1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택시운수종사자가 포함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 습니다.

먼저, 어떤 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일반적인 사항과는 달리 특정한 경우나 대상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다른 법령이 있는 경우에 그 두 법령은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에 있다고 하고, 특별법이 규율하고 있는 사항에 관한 한 특별법의 규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며, 일반법의 규정은 특별법의 규정에 모순·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적용된다고 할 것인데(법제처 2010. 7. 5. 회신 10-0129 해석례 참조), 택시발전법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종전에 여객자동차법에서 규율하고 있던 택시운송사업에 관한 사항의 일부를 이 관하여 제정된 법률로서, 택시발전법 제4조에서는 택시운송사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같은 법을 적용하되(제1항), 택시운송사업 및 택시운수종사자에 관하여 택시발전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여객자동차법에 따르도록 규정(제2항)하고 있는바, 택시운송사업 및 택시운수종사자와 관련해서는 택시발전법이 여객자동차법에 대한 특별법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택시운송사업 및 택시운수종사자에 관하여서 두 법령의 규정이 서로 상충되는 경우에는 택시발전법이 여객자동차법보다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할 것이나, 택시발전법의 규정에 모순·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는 여객자동차법이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객자동차법 제25조에서는 운수종사자가 받아야 하는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택시발전법에서는 택시운수종사자의 교육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여객자동차법 제3조의2제2항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호다목 및 라목에 따르면 여객자동차법 제24조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갖추고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 즉 택시발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택시운수종사자도 여객자동차법에 따른 “운수종사자”에 해당하므로 여객자동차법 제25조에 따라 교육을 받을 의무가 있는 운수종사자에는 택시운수종사자가 포함된다고 할 것인바, 여객자동차법에 따른 운수종사자의 교육에 관한 규정을 택시운수종사자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 택시발전법의 규정에 모순·저촉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여객자동차법 제25조 및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 및 별표 4의3은 택시운수종사자에게도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① 여객자동차법 제26조제1항제1호의 괄호 및 같은 항 제2호의 괄호 부분과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3에서는 택시운송사업의 경우 같은 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여객자동차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와 같은 내용을 택시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택시발전법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와의 중복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서(2014. 1. 28. 법률 제12377호로 개정되어 2014. 7. 29 시행된 여객자동차법 심사경과보고서 참조), 택시운수종사자가 여객자동차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행위를 한 경우에는 다른 운수종사자의 경우보다 강화된 행정처분 및 과태료처분을 규정(여객자동차법 제85조제4항제3호 및 제94조제3항제4호, 택시발전법 제18조제1항제4호 및 제23조제2항제1호 참조) 하고 있는 택시발전법에 따르도록 하려는 취지일 뿐이고, 택시운수종사자가 운수종사자로서 여객자동차법 제26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제58조 및 별표 4의3 제1호나목에 따라 보수교육을 받아야 할 의무까지 면제되도록 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는 점, ② 택시운수종사자도 여객자동차법에 따른 운수종사자로서 다른 운수종사자와 같이 여객자동차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율하는 내용의 운수종사자 준수사항을 지켜야 하는 의무가 있으나, 다만 그 근거규정이 여객자동차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가 아닌 택시발전법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가 된다는 차이만 있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택시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 및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행위를 하였다면 그 위반행위 자체는 여객자동차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운수종사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택시발전법 제1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택시운수종사자도 “여객자동차법 제26조제1항의 운수종사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여객자동차법 제26조제1항제1호의 괄호 및 제2호의 괄호 부분과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3에 따라 택시운송사업이 여객자동차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적용대상에서 배제된다는 이유만으로 택시발전법 제1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택시운수종사자는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별표 4의3 제1호나목에 따른 보수교육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한다면,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 및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행위라는 같은 법령위반 행위에 대하여 택시운수종사자는 다른 운수종사자의 경우보다 강화된 과태료처분 등을 받게 됨에도 불구하고 보수교육을 받을 의무는 없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별표 4의3 제1호나목에 따른 보수교육의 대상자인 “법령위반 운수종사자”에 택시발전법 제16조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택시운수종사자도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의견

-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별표 4의3 제1호나목에 따른 보수교육의 대상자인 “법령위반 운수종사자”에 택시발전법 제1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택시운수종사자가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혼란을 초래하는 바, 같은 규칙 별표 4의3 제1호 비고 제3호의 “법 제26조 제1항”을 “법 제26조제1항 또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로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 또한,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별표 4의3 제1호나목에 따른 보수교육에 대한 위임규정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여객자동차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운전업무를 시작하기 전에”를 삭제하거나 “운전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신규교육, 보수교육 및 수시교육”으로 정비하는 등 운수종사자의 교육에는 신규교육 뿐만 아니라 보수교육 및 수시교육도 포함된다는 점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 례 4

경상남도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등록표의 열람이나 등·초본을 교부 신청할 수 있는 “공무상 필요로 하는 경우”의 의미(「주민등록법」 제29조 제2항 등 관련)

● 질의요지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제1호에서는 주민등록표의 열람이나 등·초본의 교부 신청은 본인이나 세대원이 할 수 있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제1호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등록표의 열람이나 등·초본의 교부신청을 할 수 있는 “공무상 필요로 하는 경우”가 해당 공무(公務)에 대한 법령상 근거가 있는 경우로 한정되는지?

● 회 답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제1호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등록표의 열람이나 등·초본의 교부신청을 할 수 있는 “공무상 필요로 하는 경우”는 해당 공무에 대한 법령상 근거가 있는 경우로 한정됩니다.

● 이 유

「주민등록법」 제29조제1항에서는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받으려는 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읍·면·동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주민등록표의 열람이나 등·초본의 교부신청은 본인이나 세대원이 할 수 있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로 하거나(제1호), 관계 법령에 따른 소송·비송사건·경매 목적 수행상 필요로 하는 경우(제2호) 등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제1호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등록표의 열람이나 등·초본의 교부신청을 할 수 있는 “공무상 필요로 하는 경우”가 해당 공무에 대한 법령상 근거가 있는 경우로 한정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에서는 본인이나 세대원이 아닌 자가 주민등록표의 열람이나 등·초본의 교부 신청을 할 수 있는 사유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로 하는 경우(제1호), 관계 법령에 따른 소송·비송사건·경매목적 수행상 필요한 경우(제2호), 다른 법령에 주민등록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경우(제3호), 다른 법령에서 본인이나 세대원이 아닌 자에게 등·초본의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는 경우(제4호), 세대주의 배우자·직계혈족 등이 신청하는 경우(제5호), 채권·채무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제6호) 및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제7호)로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로 하는 경우”의 의미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제5항에서는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를 신청하려면 신분증명서를 제시하고, 그 사유를 적은 신청서 및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서는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에 해당하는 신청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신청서 및 증명자료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표와 같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칙 별표에서는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제1호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로 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근거법령과 사유를 명시한 관계기관장 명의의 문서”로 신청서를 갈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표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로 하는 경우”를 해당 공무에 대한 법령상 근거가 있는 경우로 구체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제7호에서는 본인이나 세대원이 아닌 자가 주민등록표의 열람이나 등·초본의 교부 신청을 할 수 있는 사유로서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제4항에서는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 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본인 또는 세대원에게 영향을 미치는 공공목적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제1호), 의료·연구 또는 통계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제2호), 본인 및 세대원 외의 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명백히 본인 또는 세대원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제3호)를 규정하고 있는바,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제7호 및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제4항은 법령상 근거는 없으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행정자치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본인이나 세대원이 아닌 자가 주민등록표의 열람이나 등·초본의 교부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공무에 대한 법령상 근거가 없는 경우까지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경우, 같은 항 제7호에서 주민등록표의 열람이나 등·초본의 교부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로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따로 규정할 실익이 없어지는 등 같은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 체계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나아가, 주민등록표의 열람이나 등·초본의 교부신청은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행위에 해당할 것인데,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 제1항에서는 법률·대통령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감사원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제1호) 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2호) 등을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다고 규정함으로써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정보의 처리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로 한다는 이유만으로 그 공무에 대한 법령상 근거가 없는 경우에도 주민등록표의 열람이나 등·초본의 교부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면,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정보의 처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예외적으로 허용한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제1항의 입법 취지에도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므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하여 주민등록표의 열람이나 등·초본의 교부신청을 하려는 경우라면 적어도 해당 공무에 대한 법령상 근거가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제1호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등록표의 열람이나 등·초본의 교부신청을 할 수 있는 “공무상 필요로 하는 경우”는 해당 공무에 대한 법령상 근거가 있는 경우로 한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사 례 5

부산광역시 기장군 - 도로로 설치·이용 중인 토지의 인근토지를 도시·군 계획시설(도로)사업의 시행 없이 잔여지로 보아 보상이 가능한지 여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 등 관련)

● 질의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74조제1항에서는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一團)의 토지의 일부가 협의에 의하여 매수되거나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때에는 해당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잔여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사업인정 이후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을 청구할 수 있되(전단), 수용의 청구는 매수에 관한 협의를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만 할 수 있으며, 그 사업의 공사완료일까지 하여야 한다(후단)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잔여지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액 산정 및 평가방법 등에 대해서는 협의나 재결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의 보상에 관해 규정한 같은 법 제70조 등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토지소유자와 협의 없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여 도로로 사용 중인 토지의 소유자가 해당 도로에 편입된 토지와 일단에 속하는 인접 토지에 대해 보상을 청구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도로)사업의 시행 없이 그 인접 토지를 잔여지로 보아 토지보상법 제74조에 따라 보상할 수 있는지?

● 회 답

토지소유자와 협의 없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여 도로로 사용 중인 토지의 소유자가 해당 도로에 편입된 토지와 일단에 속하는 인접 토지에 대해 보상을 청구하는 경우,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도로)사업의 시행 없이는 그 인접 토지를 잔여지로 보아 토지보상법 제74조에 따라 보상할 수는 없습니다.

● 이 유

토지보상법 제2조제2호에서는 “공익사업”이란 같은 법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같은 법에 따라 토지·물건 및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함)를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8호 및 별표 제22호에서는 공익사업의 하나로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규정하고 있고, 토지보상법 제61조에서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 소유자나 관계인이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2조 본문에서는 사업시행자는 해당 공익사업을 위한 공사에 착수하기 이전에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에게 보상액 전액(全額)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0조제1항에서는 협의나 재결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보상법 제74조제1항에서는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협의에 의하여 매수되거나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때에는 해당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잔여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사업인정 이후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을 청구할 수 있되(전단), 그 수용의 청구는 매수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만 할 수 있으며, 그 사업의 공사완료일까지 하여야 한다(후단)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잔여지 및 잔여지에 있는 물건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액 산정 및 평가방법 등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70조, 제75조, 제76조, 제77조 및 제78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32조제3항에서는 동일한 토지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취득됨으로 인하여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잔여지에 대해서는 그 일단의 토지의 전체가격에서 공익사업시행 지구에 편입되는 토지의 가격을 뺀 금액으로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토지소유자와 협의 없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여 도로로 사용 중인 토지의 소유자가 해당 도로에 편입된 토지와 일단에 속하는 인접 토지에 대해 보상을 청구하는 경우, 토지보상법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도로)사업의 시행 없이 그 인접 토지를 잔여지로 보아 토지보상법 제74조에 따라 보상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토지보상법 제74조제1항에서는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협의에 의하여 매수되거나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때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잔여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고, 매수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인정 이후부터 사업의 공사완료일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토지를 수용하거나 협의로 매수한 결과 남게 된 일단의 토지 일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해당 토지소유자에게 매수청구권 및 수용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2다68713 판결례 참조),

이 사안의 인접 토지를 토지보상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잔여지로서 매수 또는 수용하기 위해서는 ① 공익사업이 존재해야 하고, ② 도로에 편입된 토지가 공익사업의 수행에 필요하여 협의로 매수되거나 수용되어야 하며, ③ 매수 또는 수용되고 남은 잔여지에 대한 매수 또는 수용 청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공익사업”이란 토지보상법 제4조 각 호에 따른 국방·군사에 관한 사업(제1호), 관계 법률에 따라 허가·인가·승인·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철도·도로·공항·항만 등에 관한 사업(제2호) 등으로서, 그 사업 목적이 공익 목적일 뿐만 아니라 관계 법령에 따른 실질적·형식적 요건을 갖추어 시행되는 사업을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안의 도로의 경우 토지소유자와 협의 없이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일방적으로 설치된 것으로서,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도시·군계획시설(도로)사업으로 도로를 설치하는 경우 도시·군계획시설(도로)결정,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작성 및 인가 등을 말함]에 따라 설치된 것이 아니므로, 그 도로가 공중(公衆)의 통행에 이용되고 있고 그 사용 목적이 “공익”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도로의 설치를 공익사업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인접 토지를 잔여지로서 매수 또는 수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도로에 편입된 토지가 협의로 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할 것인데, 토지보상법에 따르면 “공익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토지의 경우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와 협의하여 취득할 수 있고(제14조제1항 본문), 협의가 되지 않을 때에는 사업 인정신청서에 사업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은 후(제20조제1항),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거쳐(제28조제1항 및 제30조제1항) 수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한 토지의 협의 취득 및 수용은 공익사업의 시행을 전제로 하는 것인바, 이 사안의 도로에 편입된 토지의 경우 도시·군계획시설(도로)결정 등 구체적인 공익사업의 시행이 없는 상태이므로, 도로 설치라는 사실관계에 근거하여 토지보상법에 따른 협의 매수

또는 수용을 통해 보상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도로에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 토지보상법에 따른 협의 매수 또는 수용이 없는 이상, 그 토지에 인접한 토지를 잔여지로 보아 토지보상법 제74조에 따라 보상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토지소유자와 협의 없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여 도로로 사용 중인 토지의 소유자가 해당 도로에 편입된 토지와 일단에 속하는 인접 토지에 대해 보상을 청구하는 경우,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도로)사업의 시행 없이 그 인접 토지를 잔여지로 보아 토지보상법 제74조에 따라 보상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사 례 6

전라북도 진안군 - 1회 50인 미만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노인요양시설에
「식품위생법」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적용되는지 여부
(「식품위생법」 제3조제1항 등 관련)

● 질의요지

「식품위생법」 제3조제1항에서는 누구든지 판매(판매 외의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제공을 포함함. 이하 같음)를 목적으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제조·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을 할 때에는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제1항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민보건을 위하여 필요하면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표시 등 같은 항 각 호의 표시에 관하여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진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이하 “식품등”이라 함)은 그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진열·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서는 “집단급식소”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하여 음식물을 공급하는 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의 급식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는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식품위생법」 제88조제3항에서는 집단급식소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3조, 제10조제2항 등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1회 50명 미만의 특정 다수인에게 식사를 제공하여 그 급식시설이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위생적 취급에 관한 같은 법 제3조제1항 및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관한 같은 법 제10조제2항이 해당 노인요양시설에 적용되는지?

● 회 답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1회 50명 미만의 특정 다수인에게 식사를 제공하여 그 급식시설이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위생적 취급에 관한 같은 법 제3조제1항 및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관한 같은 법 제10조제2항은 해당 노인요양시설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 이 유

「식품위생법」 제3조제1항에서는 누구든지 판매를 목적으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제조·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을 할 때에는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제1항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민보건을 위하여 필요하면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표시등 같은 항 각 호의 표시에 관하여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진 식품등은 그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판매

할 목적으로 수입·진열·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서는 “집단급식소”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하여 음식물을 공급하는 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의 급식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는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식품위생법」 제88조제3항에서는 집단급식소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3조, 제10조제2항 등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1회 50명 미만의 특정 다수인에게 식사를 제공하여 그 급식시설이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위생적 취급에 관한 같은 법 제3조제1항 및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관한 같은 법 제10조제2항이 해당 노인요양시설에 적용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1회 50명 미만의 특정 다수인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노인요양시설에 「식품위생법」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이 적용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1회 50명 미만의 “특정 다수인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행위가 같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제공”에 포함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고, 어떠한 법률의 규정에서 사용된 용어에 관하여 그 법률 및 규정의 입법 취지와 목적을 중시하여 문언의 통상적 의미와 다르게 해석하려 하더라도 그 법률 내의 다른

규정들 및 다른 법률과의 체계적 관련성 내지 전체 법체계와의 조화를 고려하여야 하므로 일정한 한계가 있다고 할 것인바(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식품위생법」 제3조제1항에 따라 “판매”의 범위에 포함되는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제공”이란 특별히 정해지지 않은 임의의 다수인에 대한 제공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노인요양시설의 입소자와 같은 특정된 다수인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제공에 해당하지 않음이 문언상 명확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1974년 12월 21일 법률 제2701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식품위생법」에서는 식품등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제2조의2를 신설하면서 같은 조 제1항에서 “판매”에 “판매 외의 수여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1986년 5월 10일 법률 제3823호로 전부개정되어 같은 해 11월 11일 시행된 「식품위생법」 제3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개정 전의 “수여”를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제공”으로 개정하여 특정 다수인에 대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공은 해당 규정의 규율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을 명확히 하였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식품위생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판매” 개념에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제공”이 포함된다고 규정한 것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판매하는 경우 외에 무료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제공하는 경우 등에도 식품등을 위생적으로 관리하도록 하여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이므로,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제공”을 문언 그대로 한정적으로 해석하여 “특정 다수인에 대한 제공”을 배제하는 것은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제공”에 “특정 다수인에 대한 제공”이 포함된다고 본다면 식품위생법령의 적용을 받는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제공 행위의 범위가 무한정 확대될 수 있고, 만일 “특정 다수인에 대한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제공” 중 일부를 선별하여 식품위생법령의 적용대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그 선별의 기준이 불분명하여 자의적으로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는 점, 이 사안의 노인요양시설은 「노인복지법」 제35조제3항 및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라 식당 및 조리실에 관한 시설기준, 설비기준 및 직원의 배치기준과 같은 규칙 별표 5 제2호에 따른 급식위생관리에 관한 같은 호 각 목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노인복지법」 제43조 제1항제1호에 따라 사업의 정지 또는 폐지 처분을 받을 수도 있어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노인복지법」 상의 행정적 조치가 마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더욱이, 「식품위생법」 제97조제1호에서는 같은 법 제10조제2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1조제2항제1호에서는 같은 법 제3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그 행정행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두3388 판결례 참조), 같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제공”을 그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넘어 노인요양시설의 입소자와 같은 “특정 다수인에 대한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제공”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1회 50명 미만의 특정 다수인에게 식사를 제공하여 그 급식시설이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위생적 취급에 관한 같은 법 제3조제1항 및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관한 같은 법 제10조제2항은 해당 노인요양시설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사 례 7

민원인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하여 입주자등이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고 공동주택을 위탁관리할 것을 정한 경우, 주택관리업자 선정 주체(「공동주택관리법」 제7조제1항 등 관련)

● 질의요지

「공동주택관리법」 제5조제1항에서는 입주자와 사용자(이하 “입주자등”이라 함)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자치관리하거나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공동주택을 위탁관리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같은 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관리법」 제11조에서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건설한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그 공동주택을 관리하여야 하고,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하였을 때에는 입주자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통지하고 해당 공동주택을 관리할 것을 요구하여야 하며, 입주자등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야 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은 입주자등이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을 결정(위탁관리하는 방법을 선택한 경우에는 그 주택관리업자의 선정을 포함함)한 경우에는 이를 사업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하여 입주자등이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고 공동주택을 위탁관리할 것을 정한 경우,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입주자 대표회의가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입주자등이 하여야 하는지?

● 회 답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하여 입주자등이 입주자 대표회의를 구성하고 공동주택을 위탁관리할 것을 정한 경우, 주택관리업자 선정은 입주자대표회의가 하여야 합니다.

● 이 유

「공동주택관리법」 제5조제1항에서는 입주자등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같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자치관리하거나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공동주택을 위탁관리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같은 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관리법」 제11조제1항에서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건설한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그 공동주택을 관리하여야 하고,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하였을 때에는 입주자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통지하고 해당 공동주택을 관리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입주자등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 전단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은 입주자등이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을 결정(위탁 관리하는 방법을 선택한 경우에는 그 주택관리업자의 선정을 포함함)한 경우에는 이를 사업주체에게 통지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함)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하여 입주자등이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고 공동주택을 위탁관리할 것을 정한 경우,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입주자대표회의가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입주자등이 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공동주택관리법」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공동주택을 위탁관리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같은 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위탁관리하는 경우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할 권한은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대표하는 자치의결기구인 입주자대표회의에 있음이 문언상 명백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공동주택관리법」 제7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 제1호의 위임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조제1항제1호에서는 같은 지침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서 입주자대표회의가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지침 제14조 제1항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할 때에는 입찰공고 내용을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지침 제21조제1항 전단 및 별표 7 제1호에서는 주택관리업자 선정 계약은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표하는 자가 낙찰자로 선정된 주택관리업자와 체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동주택관리법령의 위임에 따른 해당 지침에서도 입주자대표회의가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한다는 것을 전제로 주택관리업자 선정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공동주택관리법」 제11조제3항 전단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은 입주자등이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을 결정(위탁관리하는 방법을 선택한 경우에는 그 주택관리업자의 선정을 포함함)한 경우에는 이를 사업주체에게 통지하고,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항 괄호의 내용에 따라 입주자등이 해당 공동주택을 위탁관리하려는 경우에는 주택관리업자도 선정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주택관리법」 제11조제3항 전단은 주택관리업자의 선정을 같은 법 제7조제1항과 달리 정하고 있는 규정이 아니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사업주체에서 입주자등으로 이관되는 절차에 관한 규정으로서 입주자등이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을 결정한 경우에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이 이를 사업주체에게 통지하고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되, 해당 공동주택을 위탁관리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선정된 주택관리업자를 포함하여 통지하고 신고하라는 의미이며, 「공동주택관리법」 제13조제1항제1호에서도 사업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으로부터 같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주택관리업자의 선정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해당 관리주체에게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그와 같은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하여 입주자등이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고 공동주택을 위탁관리할 것을 정한 경우, 주택관리업자 선정은 입주자대표회의가 하여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의견

○ 「공동주택관리법」 제11조제3항 전단 괄호 부분에서는 위탁관리하는 방법을 선택한 경우에는 그 주택관리업자의 선정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주택관리업자의 선정 주체에 관하여 해석상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공동주택 관리의 이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공동주택관리법」 제11조제3항 전단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 례 8

민원인 - 주택재개발사업의 조합원 2인이 조합설립인가 후 결혼하여 1세대가 된 경우 조합원 자격 등(「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제1항제2호 등 관련)

● 질의요지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19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함) 등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은 제외함. 이하 “정비사업”이라 함]의 조합원은 도시정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이하 “토지등소유자”라 함)로 하되, 수인(數人)의 토지등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때(제2호) 등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주택재개발사업의 조합설립인가 후 조합원 2인이 결혼하여 세대를 합쳐 1세대에 속하게 된 경우, 도시정비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라 그 2인을 대표하는 1인만 조합원 자격을 갖게 되는지, 아니면 그 2인이 각각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는지?

나. 도시정비법 제46조제1항 전단에서는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함)는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는 날(사업시행인가 이후 시공자를 선정할 경우에는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날을 말함. 이하 같음)부터 60일 이내에 개략적인 부담금내역 및 분양신청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분양을 받으려는 토지등소유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분양신청기간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분양신청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주택재개발사업의 조합원 2인이 각각 도시정비법 제46조에 따른 분양신청을 한 후 결혼하여 세대를 합쳐 1세대에 속하게 되었고, 그 후 사업시행변경인가로 인하여 같은 조에 따른 분양신청을 다시 하게 된 경우, 그 2인을 대표하는 1인만 분양신청을 다시 할 수 있는지, 아니면 그 2인이 각각 분양신청을 다시 할 수 있는지?

● 회 답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주택재개발사업의 조합설립인가 후 조합원 2인이 결혼하여 세대를 합쳐 1세대에 속하게 된 경우, 도시정비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라 그 2인을 대표하는 1인만 조합원 자격을 갖게 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주택재개발사업의 조합원 2인이 각각 도시정비법 제46조에 따른 분양신청을 한 후 결혼하여 세대를 합쳐 1세대에 속하게 되었고, 그 후 사업시행변경인가로 인하여 같은 조에 따른 분양신청을 다시 하게 된 경우, 그 2인을 대표하는 1인만 분양신청을 다시 할 수 있습니다.

● 이 유

가. 질의 가 및 질의 나의 공통사항

도시정비법 제2조제9호가목에서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도시

환경정비사업 또는 주거환경관리사업의 경우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를 “토지등소유자”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추진위원회(같은 법 제13조제2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를 말함)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10분의 8 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말함)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정비법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정비사업의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로 하되,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2호에서는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보는 경우의 하나로 수인의 토지등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때(이 경우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미혼인 20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1세대로 보며, 1세대로 구성된 수인의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설립인가 후 세대를 분리하여 동일한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때에도 이혼 및 20세 이상 자녀의 분가를 제외하고는 1세대로 봄)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8조제2항제6호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내용의 기준으로 1세대 또는 1인이 하나 이상의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한 경우 1주택을 공급하고,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2인 이상이 1주택 또는 1토지를 공유한 경우에는 1주택만 공급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바,

나. 질의 가에 대하여

이 사안은 주택재개발사업의 조합설립인가 후 조합원 2인이 결혼하여 세대를 합쳐 1세대에 속하게 된 경우, 도시정비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라 그 2인을 대표하는 1인만 조합원 자격을 갖게 되는지, 아니면 그 2인이 각각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정비법 제19조제1항제2호에서는 “수인의 토지등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보는 경우 “수인의 토지등소유자가 1세대에 속할 것”만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을 뿐이고 그 시점은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규정의 문언상 1세대에 속하게 된 시점이 조합설립인가 전인지 후인지와 상관없이 수인의 토지등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경우에 해당하기만 하면 도시정비법 제19조제1항제2호가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7. 4. 27. 회신 17-0040 해석례 참조).

그리고, 도시정비법 제19조제1항제2호의 입법 취지가 토지 또는 건축물을 하나의 세대 내에서 분할하여 토지등소유자가 수인이 되는 때에는 그 대표자 1인만을 조합원으로 인정하여 투기세력의 유입으로 도시정비사업의 사업성이 낮아지는 것을 막는 등 조합원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의안번호 제1801705호 도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심사보고서 참조)이기는 하나, 투기 목적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해당 규정의 적용을 달리한다는 등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바, 이는 결국 하나의 정비사업으로 인한 조합원 자격, 즉 분양받을 권리는 세대를 기준으로 하나만 인정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안과 같이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원 2인이 조합설립인가 후 결혼하여 세대를 합쳐 1세대에 속하게 된 경우도 “수인의 토지등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경우”로서 도시정비법 제19조제1항제2호가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주택재개발사업은 도시정비법 제16조, 제28조, 제46조 및 제48조 등에 따라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조합원 분양신청, 관리처분계획인가 등의 절차를 거쳐 진행되는데, 같은 법 제48조제2항제6호에서는 사업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할 때 1세대 또는 1인이 하나 이상의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한

경우에는 1주택을 공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주택재개발사업의 조합설립인가 후 조합원 2인이 결혼하여 세대를 합쳐 1세대에 속하게 된 경우 도시정비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라 그 2인을 대표하는 1인만 조합원 자격을 갖게 된다고 할 것입니다.

다. 질의 내에 대하여

도시정비법 제28조제1항에서는 사업시행자(같은 법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동시행의 경우를 포함하되, 사업시행자가 시장·군수인 경우를 제외함)가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사업시행 계획서에 같은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정관등과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고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하고,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정비사업을 중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 본문에서는 시장·군수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인가(시장·군수가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한 경우를 포함함)를 하거나 그 정비사업을 변경·중지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그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정비법 제46조제1항 전단에서는 사업시행자는 같은 법 제28조 제4항에 따른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개략적인 부담금 내역 및 분양신청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분양의 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6조제2항에서는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분양을 받으려는 토지등 소유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분양신청기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분양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8조제3항 전단에서는 사업시행자는 같은 법 제46조에 따라 분양신청을 받은 후 잔여분이 있는 경우에는 정관등 또는 사업시행계획이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보류지(건축물을 포함함)로 정하거나 조합원 외의 자에게 분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주택재개발사업의 조합원 2인이 각각 도시정비법 제46조에 따른 분양신청을 한 후 결혼하여 세대를 합쳐 1세대에 속하게 되었고, 그 후 사업시행변경인가로 인하여 같은 조에 따른 분양신청을 다시 하게 된 경우 그 2인을 대표하는 1인만 분양신청을 다시 할 수 있는지, 아니면 그 2인이 각각 분양신청을 다시 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정비법 제46조제2항에서는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분양을 받으려는 토지등소유자는 분양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사업시행자는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분양신청을 받은 후 잔여분이 있는 경우에 조합원 외의 자에게 분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48조제3항을 반대해석하면,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분양신청은 토지등소유자 중에서도 조합원만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안과 같이 사업시행변경인가로 인하여 같은 조에 따른 분양신청을 다시 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분양신청을 다시 하는 때를 기준으로 하여 조합원 자격을 갖춘 자만이 분양신청을 다시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도시정비법 제19조제1항제2호에서는 “수인의 토지등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보는 경우 “수인의 토지등소유자가 1세대에 속할 것”만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을 뿐이고 그 시점은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규정의 문언상 1세대에 속하게 된 시점이 분양신청 전인지 후인지와 상관없이 수인의 토지등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경우에 해당

하기만 하면 도시정비법 제19조제1항제2호가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도시정비법 제19조제1항제2호의 입법 취지가 토지 또는 건축물을 하나의 세대 내에서 분할하여 토지등소유자가 수인이 되는 때에는 그 대표자 1인만을 조합원으로 인정하여 투기세력의 유입으로 도시정비사업의 사업성이 낮아지는 것을 막는 등 조합원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는 하나, 투기 목적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해당 규정의 적용을 달리한다는 등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바, 이는 결국 하나의 정비사업으로 인한 조합원 자격, 즉 분양받을 권리는 세대를 기준으로 하나만 인정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안과 같이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원 2인이 분양신청 후 결혼하여 세대를 합쳐 1세대에 속하게 된 경우에도 “수인의 토지등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도시정비법 제19조제1항제2호가 적용된다고 할 것이고, 이에 따라 그 2인을 대표하는 1인만 조합원 자격을 갖게 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주택재개발사업의 조합원 2인이 각각 도시정비법 제46조에 따른 분양신청을 한 후 결혼하여 세대를 합쳐 1세대에 속하게 되었고, 그 후 사업시행 변경인가로 인하여 같은 조에 따른 분양신청을 다시 하게 된 경우 그 2인을 대표하는 1인만 분양신청을 다시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의견

도시정비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인의 토지등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때”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1세대에 속하게 된 시점에 대한 기준이 불명확하여 혼란을 초래하는 바, 결혼으로 인하여 세대를 합치는 경우와 같이 투기의 목적이 아닌 경우에 해당 규정을 달리 적용할 필요가 있는지 등을 정책적으로 판단하여 이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동산 / 임대차

Q

5년 전까지 장모님과 함께 거주하다가(주민등록 등재) 지난 5년간 주민등록이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장모님과 주민등록을 다시 합친지 이제 6개월 되었습니다. 장모님도 노부모 부양에 포함되는지, 5년 전의 주민등록 등재를 인정받아 노부모 부양자로 특별공급 분량을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기재되어 있다면 장모님이라도 노부모에 해당됩니다. 다만, 노부모 부양자 특별분양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3년 이상의 동일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장모의 노부모 해당 여부

☞ 장모님도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되어 있다면 부양가족에 포함됩니다.

A

☞ 다만, 장모님과 거주는 따로 하면서 주민등록등본에만 함께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함께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민등록만 이전하여 분양을 받아 적발되면 주택공급 질서 교란 혐의로 당첨이 취소됨은 물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 노부모의 인정기준

☞ 직계 존속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3년 이상 “연속해서” 청약자와 동일 주민등록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다시 주민등록을 합친지 3년이 지나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Q

6개월 전 상속으로 잠깐 부모님 주택을 소유했다가 팔았습니다. 현재 이혼 상태이고, 미성년인 아이가 있으나 전처가 키우고 있습니다. 또한 5년 동안 가게를 하면서 소득세를 납부했으나 현재는 폐업을 한 상황입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신청해도 될까요?

A

◇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격 기준

- ☞ 상속, 증여를 통해 주택을 소유했다하더라도 생애 최초 특별공급은 세대에 속한 모든 사람이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만 청약할 수 있으므로 신청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 생애 최초 특별공급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데 미혼인 자녀와 주민등록등본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자녀와 동일 주민등록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다면 신청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 ☞ 생애 최초 특별공급은 자영업자가 아니더라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1년 내에 소득세를 납부한 사람으로서 지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하였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Q

회사 때문에 배우자 및 자녀들과 주민등록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제가 세대주로 다자녀 특별분양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A

☞ 배우자는 주민등록상 분리되어 있더라도 부양가족 수에 포함되지만, 자녀들은 분양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재되어 있어야 하므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입주자 모집공고일까지 주민등록을 옮기면 부양가족에 포함됩니다.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자격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태아포함)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은 현재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의 10%(출산장려의 목적으로 지역별 출산율, 다자녀가구의 청약현황 등을 고려해 입주자모집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15%)의 범위에서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을 기준으로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공공분양 아파트에 청약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재산 기준이 215,500,000원 이하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살고 있는 전세금이 이보다 더 큼니다. 이것도 재산에 포함되어 청약을 낼 수 없게 되는 건가요?

A

아닙니다. 공공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사람이 부동산(건축물 및 토지), 자동차 등의 자산을 기준 이상 가졌는지 확인하는 경우는 부동산이나 자동차 등을 소유한 경우입니다. 따라서 전세보증금은 이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다른 요건이 충족된다면 청약을 신청하셔도 됩니다.

◇ 자산산정의 기준

부동산 가액의 산출기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5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하
- 부동산(건축물 및 토지)의 공시가격은 ① 해당 부동산이 소재한 지방자치단체를 방문해 확인하거나, ②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http://www.realtyprice.kr/notice/>)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 가액의 산출기준

- 2천7백5십만원에 통계청에서 2010년 기준으로 발표하는 전년도 운송장비 소비자물가지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이하
- 자동차 가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청약 신청자 개인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아파트 분양을 시행하는 담당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Q

입주자격 중 소득 및 자산보유 조건에서 입주신청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 혹은 동일 주민등록표상의 장인·장모의 소득 및 자산보유를 포함하나요? 또한 자동차 보유 가액을 산정할 때 비영업용 승합차도 포함하나요? 자동차 보유기준은 갱신할 때에도 적용되나요?

A

☞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인 주택, 소득, 부동산, 자동차 기준의 적용 대상은 신청자 본인, 배우자, 세대원(신청인 본인과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고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입니다.

☞ 따라서 신청인 본인과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고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의 소득을 합산합니다.

☞ 신청자를 기준으로 배우자의 직계존속(장인·장모)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 자동차 보유 가액 산정 시에 “비영업용”인 “승용” 자동차에 한해 보유가액을 산정합니다.

☞ 따라서 비영업용 승합차는 자산기준에 포함되는 자동차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장애인사용 자동차와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7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의 보철용 차량은 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해당 세대가 2대 이상의 차량을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국민임대주택 입주자보유 토지 및 자동차관련 업무처리기준」은 갱신계약 시점이 도래되는 국민임대주택에 대해 적용하거나, 차기 갱신계약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계약 갱신 때마다 적용될 것입니다.

Q

곧 이사를 할 예정인데 혹시나 이사도중에 이사업체와 분쟁이 생길까 걱정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삿짐 관련 피해분쟁을 미리 예방할 수 있나요?

A

☞ 다음의 항목들을 실천하면 이삿짐 피해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① 반드시 이사업체와 검인계약서를 작성하고 1부씩 보관하세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계약조건 변경이나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분쟁이 일어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 ② 이사업체의 피해보상 이행보증금 또는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세요.
- ③ 귀중품은 이사 전에 본인이 따로 보관하세요.
- ④ 이사작업 전에 파손 및 훼손되어 있는 물품을 확인하고 그러한 우려가 있는 품목은 따로 지정하세요.
- ⑤ 작업 중 문제가 발생하면 즉시 현장 책임자와 확인하여 조치하세요.
- ⑥ 보관 이사의 경우 별도의 이사화물 보관계약서를 작성하세요.

◇ 이삿짐 피해분쟁 예방하기

☞ 이삿짐 피해분쟁은 책임소재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으므로 무엇보다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대한 미리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A

☞ 귀찮고 힘든 이사짐 피해분쟁 예방하기, 어떻게 하면 될까요?

- 반드시 이사업체와 검인계약서를 작성하고 1부씩 보관하세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계약조건 변경이나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분쟁이 일어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 이사업체의 피해보상 이행보증금 또는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세요.
- 귀중품은 반드시 이사 전에 본인이 보관하세요. 특히 귀중품의 파손 등으로 인한 분쟁을 막기 위해서는 이사 전에 작업자와 함께 기존에 파손되어 있는 물품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사작업 전에 파손 및 훼손되어 있는 물품을 확인하고 그러한 우려가 있는 품목은 따로 지정하세요.
- 작업 중 문제가 발생하면 즉시 현장 책임자와 확인하여 조치하세요.
- 보관이사의 경우에는 별도의 이사화물 보관계약서를 작성하세요.

Q

보증금 2,000만원에 월세 20만원을 내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임대차를 등기하는 제도는 없는데, 전세권등기를 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임대차인 경우 등기를 하지 않아도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 보증금의 보호방법

- 임대차는 등기를 하지 않아도 임차인이 ① 주택을 인도받고, ② 주민등록을 마치면 그 다음날부터 제삼자에 대해 효력이 생깁니다.
- 또한 ③ 확정일자까지 받아 놓으면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 따라서 굳이 등기를 할 필요는 없지만, 주민등록 이전을 하지 못하는 특별한 사정 등이 있다면 임대인과 협의하여 전세권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생활에 유익한 법무상식

법 무 단 신



법무단신

‘주택용 전기 누진세’ 부당이득반환소송에서 소비자 ‘첫 승’ 소

주택용 전기에 대해 누진제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비자들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처음으로 승소했다. 전국적으로 비슷한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판결이어서 주목된다.

인천지법 민사16부(재판장 홍기찬 부장판사)는 27일 시민 868명(소송대리인 박상언 변호사)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전기요금 부당이득반환소송(2016 가합3177)에서 원고승소판결했다. 이 판결에 따라 한전은 원고들에게 각각 적게는 380원에서 많게는 450여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재판부는 “전기판매사업을 독점하고 있는 한전의 약관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소비자들은 전기를 공급받지 못하게 되므로 한전이 작성한 전기공급약관은 사용자들에게 사실상 강제력을 가지게 된다”며 “전기 분배를 위한 요금체계 구성이 특정집단에 과도한 희생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형평을 잃거나 특정 집단에 다른 집단과 다른 요금체계를 적용하는데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면, 결과적으로 전기사용자들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누진제의 도입은 산업용 등 다른 전력 요금에 비해 전기 억제 효과가 큰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차별적 취급이 용인되기 위해서는 합리적 이유와 효용성이 입증되어야 하는데도 한전은 이를 입증할만한 답변을 하지 않았다”면서 “주택용 전력의 사용을 억제하는 것으로 전체 전력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절약되는지에

대해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전은 ‘주택에는 시간대별 전기사용량을 측정할 수 있는 전력량계가 설치돼있지않아 산업용 전력에 적용되고 있는 요금제를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누진제가 설정된지 38년이 지났고 한전

내부적으로도 누진제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개선에 나선지 10년이 지났음에도 아직도 전력량계가 설치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택용 전력에 시간대별이나 계절별 전기요금제를 적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합리적 이유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누진세를 규정한 약관규정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시민들의 청구에 대해서는 “원고들이 이미 법적지위를 지키기 위한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고 있으므로, 별도로 약관의 무효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방법이 아니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며 각하했다.

앞서 지난해 서울중앙지법과 광주지법은 “주택용 전기요금 약관이 약관규제법상 공정성을 잃을 정도로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한전의 손을 들어줬다.

법무단신

인권위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도입하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가 정부에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 도입을 권고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27일 상임위원회를 열고 국방부 장관에게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보장하기 위한 대체복무제 도입 계획을 수립·이행할 것을 권고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국회의장에게는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해 국회에 발의, 계류 중인 병역법 개정안에 대해 대체복무심사기구의 독립적인 운영과 공정성 확보 명시 등 일부 내용을 보완해 조속히 입법하라는 의견을 표명키로 했다.

인권위는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는 형사처벌로 해결할 수 없는 인권 문제”라며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헌법 제19조와 UN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의 양심의 자유 보호 범위 내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양심의 자유와 병역의 의무를 조화시키기 위해 대체복무제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또 “최근 들어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한 하급심의 무죄판결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인권위가 실시한 국민인권의식조사에 따르면, 대체복무제 도입에 대한 찬성 비율은 2005년 최초 조사(찬성 10.2%)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 지난해에는 46.1%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다른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대체복무제 도입에 대한 긍정적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등 양심적 병역거부에 따른 대체복무제 도입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점차 확산되는 추세라는 것이 인권위의 설명이다.

다만 인권위는 “대체복무제 운영에서 신청자에 대한 공정한 심사와 판정이 핵심인 만큼 대체복무심사기구의 독립적 운영과 공정성을 보장하는 규정이 필요하다”면서도

“독일, 대만 등 다른 국가의 사례를 참고해 (대체복무심사기구가) 국방부나 병무청 소속으로 운영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재인(64·사법연수원 12기)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대체복무제 도입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대체복무제 도입은 지난달 발표된 새 정부가 추진해야 할 10대 인권과제에도 포함된 상태다.

그동안 UN 자유권규약위원회를 비롯한 국제사회는 우리나라에 양심적 병역 거부권 인정과 대체복무제 도입을 지속적으로 권고해왔다. 인권위도 지난 2005년 대체복무제 도입 권고를 시작으로 2016년 11월 양심적 병역거부권 인정에 관한 헌법소원에 대한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하는 등 대체복무제 도입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왔다. 2005년 인권위는 대체복무제 도입을 권고하면서 대체복무제 도입요건으로 △대체복무의 공정한 판정기구와 절차 △대체복무 영역 △대체복무 기간(현역의 1.5배)·생활형태(단체합숙 원칙) 등을 제시한 바 있다.

국제사회와 인권위 권고 등에 따라 노무현 정부는 2007년 대체복무제를 허용할 방침을 밝혔었다. 그러나 이명박정부는 2008년 12월 대체복무제 도입 계획을 전면 백지화했고, 이후 정부는 ‘한반도의 안보 상황에 대한 긍정적인 변화와 국민의 공감대 형성이 전제돼야 대체복무제를 도입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해왔다.

한편 대법원은 양심적 병역거부는 현행법 위반이라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지난 25일 훈련소 입소 통지서를 받고도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며 소집에 응하지 않은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신모(22)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병역법 제88조 1항에서 처벌의 예외사유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를 처벌하는 것이 헌법이 정한 양심의 자유에 어긋나는 것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중 사상·양심·종교의 자유를 규정한 제18조에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이 병역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되지 않고,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형사처벌하지 말라는 유엔(UN) 자유권규약위원회의 권고안은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대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실형을 확정하는 것은 올 들어 13번째다.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현역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기일부터 정해진 기간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소집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하급심 법원에서는 200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과 2004년과 2011년 헌법재판소 합헌 결정과는 반대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는 판결이 종종 나오고 있다.

법무단신**담배꽂초 버렸다 화재로 50억대 피해... 30대 남성 벌금형**

2015년 50억원대의 재산피해를 낸 청주 공장 화재의 원인제공자로 지목된 3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대로 유죄가 확정될 경우 피해자들에게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물어줘야할 수도 있어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청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정선오 부장판사)는 실화 혐의로 기소된 A(32)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벌금 1000만원을 최근 선고했다(2017노 144).

재판부는 “CCTV 녹화영상을 보면 종이박스에서 불이 시작돼 불길의 커지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고, 이후 그 불길이 창고건물에서 벽면으로 옮겨붙은 점 등을 보면 A씨가 피운 담배꽂초의 불씨가 종이박스 더미에 떨어져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당시 가랑비가 내려 담배꽂초에서 불이 시작될 수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사건 장소에 오후 6시께 다량의 종이박스가 새로 적재되었고, 가랑비 정도로는 박스의 내부까지 물기가 침투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청주의 한 물류회사에서 일하던 A씨는 2015년 3월 18일 오후 6시 42분께 회사 물품보관창고 출입문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꽂초를 버렸다. 담배꽂초의 일부가 종이박스 위로 떨어지자 A씨는 발로 종이박스를 비벼 밟은 후 사무실로 돌아왔다. 그런데 20분 후 종이박스더미에서 시작된 불이 순식간에 커져 인근 건물까지 옮겨붙었고 총 3개의 창고를 태우고 4시간만에 진화됐다. 화재로 인한 피해액은 51억 5800만원에 달했지만, 피해를 본 물류창고는 불이나기 3일전 화재보험이 만기돼 한푼도 보상을 받지 못했다.

법무단신 **출장길에 교통사고 구조하다 사망... 법원 “업무상 재해”**

출장에서 돌아오던 길에 교통사고를 목격하고 구조활동을 하다 차여 치여 사망한 근로자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는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6구합9800)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상사와 함께 동료 집을 찾아 해외 출장 업무를 협의했다. 협의를 마치고 상사와 함께 복귀하던 중 교통사고를 목격한 A씨는 사고 차 앞쪽에 차를 세웠다. 사고차에 사람이 탑승한 걸 확인한 A씨는 신고를 한 뒤 갓길에 서서 구조차량을 기다렸다. 그런데 트레일러 차가 정차돼있던 사고 차량을 뒤늦게 발견해 급제동을 걸면서 우측으로 피하려다 갓길에 서있던 A씨를 들이받았다.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A씨의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신청했지만, 공단은 “A씨가 사고 구조를 위해 갓길에 서있었던 것은 업무와 무관하다”며 거부했다.

하지만 법원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A씨가 사고를 목격하고 구조행위를 한 것이 출장 업무를 마치고 근무장소로 돌아오는 경로와 방법에 있어 통상적인 경로가 아니라거나 통상적 경로에서 이탈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교통사고 구조행위는 출장지에서 사무실로 돌아가는 과정의 운전자가 행할 수 있는 범위 내이지, 자의적이고 사적 행위라고 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A씨의 구조행위는 업무에 당연히 통상 수반하는 범위 내의 행위
이므로 그 행위 중 사고로 사망한 것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 “차량을 운행하는 사람은 누구나 사고로 정차하고 있는 상황을 맞닥뜨릴 수
있다”며 “사고를 지나친 사람을 비난하기는 어렵더라도, 사고를 목격하고 구조
행위를 한 사람을 사고를 지나친 사람보다 더 두텁게 보호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정의에도 부합한다”고 판시했다.

법무단신

“알레르기 있으니 새우 빼달라” 손님 요청 무시한 중국집...” 6790만원 배상

갑각류 알레르기가 있으니 새우를 빼달라는 손님의 요구에도 새우가 들어간 자장면을 제공한 중국집 주인이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

수원지법 민사14부(재판장 이정권 부장판사)는 손님 A씨가 모 중국음식점 사장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6790만원을 배상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2014가합62810).

재판부는 “A씨는 B씨가 운영하는 중국음식점에서 종업원에게 갑각류 알레르기가 있음을 알렸기때문에 B씨와 종업원은 각별히 주의할 의무가 있었다”며 “B씨는 A씨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새우가 든 음식을 먹은 A씨는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 일상적인 대화가 어려울 정도로 목소리에 문제가 생겼다”며 “이는 통역사인 A씨에게 치명적인 장애”라고 설명했다.

다만 “A씨는 당시 갑각류 알레르기가 있음을 스스로 알고 있었고 음식에 새우가 들어있다는 점을 발견하고도 계속해 음식을 먹었다”며 A씨의 책임도 일부 인정해 679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A씨는 2013년 9월 경기 화성시에서 B씨가 운영하는 중국집에서 자장면을 시키면서 “갑각류 알레르기가 있으니 새우는 넣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중국집 종업원은 새우를 빼지 않은 자장면을 A씨에게 제공했다. 이를 먹은 A씨는 목이 붓고 호흡이 곤란해지는 등 알레르기 반응을 보여 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A씨는 이후에도 약 한달 간 병원 치료를 받았다. 호흡곤란 등의 증상은 호전됐지만 쉼 목소리가 나는 등 일상생활과 직장생활에 장애를 겪자 A씨는 “1억원을 배상하라”며 B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제·개정된 주요 법령내용



어선법 시행규칙

[시행 2017.6.28.] [해양수산부령 제244호, 2017.6.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어선거래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어선 관련 정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도록 하고, 어선 등에 대한 매매 또는 임대차를 중개하는 사업을 하려는 경우 어선중개업자가 어업관리단장에게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어선법」(법률 제14510호, 2016. 12. 27. 공포, 2017. 6. 28.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운영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를 정하고, 어선중개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어선중개업 등록신청서에 보증보험 가입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갖추어 등록 신청을 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선박국적증서 등의 비치의무가 면제되는 어선을 새로 추가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선박국적증서 등의 비치의무 면제(안 제33조의2제3호 신설)

어업허가사항, 어선검사정보 등이 집적회로(IC) 칩의 형태로 포함되어

있는 연근해어업 허가증을 비치한 총톤수 2톤 미만의 어선에 대해서도 선박 국적증서 등의 비치의무를 면제하여 어업인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함.

나. 어선거래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에 구축되는 정보(안 제69조의3 신설)

해양수산부장관이 어선 및 어선의 설비 등의 매매 또는 임대차 가격, 매물 현황 및 어선중개업자의 거래현황 등 어선거래에 관한 정보 등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함.

다. 어선중개업 등록 신청 등(안 제69조의4 신설)

어선중개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어선 및 어선설비 등의 중개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사실 및 보증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어업관리 단장에게 등록 신청을 하도록 하고, 어업관리단장은 그 신청인이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어선중개업 등록증을 내어 주도록 함.

〈해양수산부 제공〉

【제정·개정문】

◎해양수산부령 제244호

어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6월 28일

해양수산부장관 (인)

어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해양수산부령 제217호 어선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어선등록말소확인서”를

“별지 제34호의2서식에 따른 어선등록말소확인서”로 한다.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어선의 등록 말소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4호 서식에 따른 어선등록말소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첨부하여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등록 말소의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2. 어선번호판
3. 선박국적증서등
4. 다음 각 목의 서류(「선박등기법」 제2조에 따른 선박등기 대상 어선의 경우에 한정한다)
 - 가. 선박등기부 등본
 - 나. 압류권자·저당권자·공유자 등 해당 어선에 대하여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이하 “이해관계인”이라 한다)의 승낙서 또는 해당 이해관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판결문의 등본(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33조의2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연근해 어업 허가증을 비치한 총톤수 2톤 미만의 어선

제42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① 법 제5조의2제1항 본문에서 “해양수산물부령으로 정하는 어선”이란 법 제2조 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어선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선은 제외한다.

1. 무동력선
2.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내수면어업에 종사하는 어선
3. 수산업에 관한 시험·조사·지도·단속에 종사하는 어선
4. 「수산업법」 제8조에 따른 면허어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27조 제1항·제3항에 따라 관리선으로 지정받거나 승인받은 어선. 다만,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른 낚시어선은 제외한다.

5. 「선박안전 조업규칙」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서해특정해역에서 「수산업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근해자망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의 부속선
6. 총톤수 2톤 미만의 어선으로서 상갑판이 없이 현단(舷端)으로만 이루어져 있거나, 상갑판 상부에 구조물이 없는 어선(기관실의 보호를 위하여 기관실 위벽(圍壁)만 설치한 어선을 포함한다)

제47조제1항제1호 가목 중 “기관실위벽(圍壁)”을 “기관실 위벽”으로 한다.

제4장의2(제69조의2부터 제69조의7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장의2 어선 등의 거래

제69조의2(어선거래시스템에 포함된 정보의 이용 등)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어선거래시스템을 통하여 어선 및 법 제3조에 따른 어선의 설비(법 제5조에 따른 무선설비를 포함한다. 이하 “어선설비등”이라 한다)의 매매 또는 임대차와 관련한 정보 중 어선소유자 등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된 정보의 제공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71호의2서식의 어선거래정보이용신청서에 해당 신청사항에 대한 설명자료를 첨부하여 공단의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공단의 이사장은 법 제31조제2항 후단에 따른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 후 그 심사결과를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신청내용의 타당성·적합성
2.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의 침해 여부
3. 자료의 목적 외 사용여부 및 안전관리대책
4. 그 밖에 신청내용의 처리가 어선 및 어선설비등의 거래에 지장이 있는지 여부

③ 공단의 이사장은 제2항에 따라 심사를 받은 정보 및 이미 공표된 통계자료 등을 인쇄 또는 정보통신망에의 연결 등으로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라 심사를 받은 정보의 제공은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한정하여야 하며, 어선원부 또는 그 전산자료를 그대로 복제하여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④ 공단의 이사장은 제3항에 따라 해당 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별지 제71호의3서식에 따른 어선거래정보이용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69조의3(데이터베이스 구축 정보) 법 제31조제3항제4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어선 및 어선설비등의 매매 또는 임대차 가격, 매물현황 및 법 제31조의2에 따라 어선중개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어선중개업자”라 한다)의 거래현황 등 어선거래에 관한 정보
2. 어선의 사고·수리 이력 및 어업정지 등 행정처분 현황에 관한 정보
3. 어선의 담보·압류 또는 그 해제 및 보험 등에 관한 정보

제69조의4(어선중개업 등록의 신청 등) ① 법 제3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어선중개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71호의4서식의 어선중개업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어업관리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을 받은 어업관리단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건축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대장(「건축법」 제20조제5항에 따른 가설건축물대장은 제외하며, 이하 “건축물대장”이라 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1. 법 제31조의2제2호에 따른 어선 및 어선설비등의 중개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신청일 전 1년 이내에 받은 교육만 해당한다)
2. 법 제31조의9제1항에 따른 보증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어선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중개사무소의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
4. 반명함판 사진(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사진만 해당한다)

② 법 제3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어선중개업의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71호의4서식의 어선중개업 변경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어업관리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을 받은 어업관리단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건축물대장(중개사무소가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제3항에 따른 어선중개업 등록증
2. 등록한 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어선중개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의 신청을 받은 어업관리단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지 제71호의5서식에 따른 어선중개업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내어 주어야 한다.

1. 법 제31조의2 각 호의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법 제31조의3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그 밖에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④ 어업관리단장은 제3항에 따라 어선중개업 등록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1호의6서식에 따른 어선중개업 등록대장(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69조의5(어선중개업 교육) ① 법 제31조의2제2호에 따라 어선중개업의 등록을하려는 자가 이수하여야 하는 교육의 과목, 시간 및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과목(3과목): 어선중개업 제도, 어선중개업 실무, 직업윤리 및 소비자보호
2. 교육시간: 21시간 이상(등록신청일 전 1년 이내에 받은 교육시간을 말한다)
3. 교육내용: 제1호의 교육과목별로 평가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모든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하여야 한다. 다만, 평가득점에 미달한 사람에 대해서는 1회에 한하여 다시 평가할 수 있다.

② 법 제31조의7에 따라 어선중개업자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후 2년마다 보수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수 교육의 내용 및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내용: 어선중개 관련 법·제도, 어선중개 및 경영 실무, 직업윤리 등
2. 교육시간: 6시간 이상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교육방법 및 교육계획 등 교육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69조의6(행정처분기준) 법 제31조의4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19의2와 같다.

제69조의7(휴업·폐업 및 재개업 등의 신고) ① 법 제31조의5에 따라 어선중개업자는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1호의7 서식에 따른 휴업·폐업·재개업·휴업연장 신고서에 어선중개업 등록증을 첨부하여 어업관리단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어업관리단장은 법 제31조의5제3호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반납 받은 어선중개업 등록증을 어선중개업자에게 돌려 주어야 한다.

제69조의7 다음에 장 번호 및 장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 보칙

제7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0조의2(어선중개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7조의2 제2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어선중개업자의 어선 및 어선설비등에 대한 매매 또는 임대차의 중개에 대한 사항을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

제71조 다음의 “제5장 보칙”을 삭제한다.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70조제4항”을 “제69조의4제3항에 따른 어선중개업 등록증, 제70조제4항”으로 한다.

별표 6 제1호나목12)에 카)를 다음과 같이 한다.

카) 전기설비

- (1) 전력조사포(동시에 사용하는 발전기 합계용량이 50kVA 이상인 것에 한정한다)
- (2) 전기기기 배치도(동시에 사용하는 발전기 합계용량이 50kVA 이상인 것에 한정한다)
- (3) 선등 배치도

별표 6 제4호가목에 4) 및 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강도계산서(강화플라스틱 재질은 선체판두께측정 등에 의한 강도계산서를 말하며, 2) 및 3)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총톤수 10톤 미만 어선의 경우에는 강도계산서로 갈음할 수 있다)

5) 1)부터 4)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총톤수 2톤 미만 어선의 경우에는 1)의 일반배치도

별표 8 제2호라목1) 중 “발전기”를 “발전기(어선의 추진 및 항해에 관계있는 것에 한정한다)”로 한다.

별표 16 제1호다목 및 라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프로펠러축계에 대하여는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액체탐상시험으로 할 수 있다.

1) 직경 100밀리미터 미만의 제2종 프로펠러축계

2) 스테인리스강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의 비자성체 재질의 프로펠러축계

라. 총톤수 10톤 미만 어선의 프로펠러축계는 선미관 후부 또는 스트럿베어링 내면 상부와 축과의 틈새가 다음에서 정한 값 이내의 경우에는 별표 8 정기검사 준비사항 중 제2호나목 및 별표 9 중간검사 준비사항 중 제1호나목2)에 따른

검사의 준비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총톤수 5톤 이상 10톤 미만 어선에 대한 검사의 준비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낚시어선으로 그 어선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생략할 수 있다.

- 1) 프로펠러축의 지름이 230밀리미터 이하인 경우: 6밀리미터
- 2) 프로펠러축의 지름이 230밀리미터 초과 305밀리미터 이하인 경우: 8밀리미터
- 3) 프로펠러축의 지름이 305밀리미터 초과인 경우: 9.5밀리미터

별표 16 제3호에 거목 및 너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거. 총톤수 5톤 미만의 선외기 설치 어선의 경우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낚시어선으로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별표 8 정기검사 준비사항 중 제1호가목, 다목, 라목, 카목(선체 외부에 한정한다), 제2호가목, 제3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검사준비를 생략할 수 있다.

너. 별표 8 정기검사 준비사항 중 제1호나목 및 별표 9 중간검사 준비사항 중 제1호가목(별표 8 제1호나목에 한정한다)에도 불구하고 타베어링부의 각 베어링에 대한 마모한도가 다음에서 정하는 값 이내의 경우에는 타를 들어올리거나 빼내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프로펠러축을 발출(拔出)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1) 핀틀의 지름이 50밀리미터 이하인 경우: 3밀리미터
- 2) 핀틀의 지름이 50밀리미터 초과 100밀리미터 미만인 경우: 5밀리미터
- 3) 핀틀의 지름이 100밀리미터 이상인 경우: 0.01D에 4밀리미터를 합한 값("D"는 타두재 지름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 4) 넥베어링: 0.01D에 2밀리미터를 합한 값

별표 19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의 뒤쪽 유의사항란 중 "2천만원"을 각각 "3천만원"으로 한다.

별지 제34호서식의 앞쪽 첨부서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34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35호서식부터 별지 제37호서식까지의 뒤쪽 중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생년월일”로 한다.

별지 제71호의2서식부터 제71호의7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76호서식 중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를 “어업관리단장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로 하고, 같은 서식 유의사항란의 제2호 중 “출장정지명령서”를 “어선중개업 등록증, 출항정지명령서”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어선의 등록말소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어선의 등록말소를 신청한 경우에는 제2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통계법 시행령

[시행 2017.6.27.] [대통령령 제28144호, 2017.6.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통계청장이 가족관계등록전산자료 및 출생신고자료 등을 활용하여 인구 동태 통계를 작성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통계법」이 개정(법률 제14467호, 2016. 12. 27. 공포, 2017. 6. 28. 시행)됨에 따라, 통계청장이 법원행정처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가족관계등록전산자료의 범위를 정하고, 인구동태통계 작성을 위한 조사의 범위 등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통계작성의 대상이 자연인인 경우 통계작성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통계작성기관의 장이 성별 구분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통계작성의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통계작성의 대상이 자연인인 경우 성별 구분의 예외 인정(제25조제4호 단서)

1) 통계작성기관의 장이 자연인을 통계작성의 대상으로 하여 새로운 통계를 작성하려는 경우 예외 없이 성별 구분을 포함하여 통계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어 통계의 내용상 성별 구분이 필요 없는 통계 등의 경우에는 오히려 행정력의

낭비가 발생하고 있음.

2) 통계청장이 여성가족부장관과 협의하여 통계 방법상의 한계로 성별 구분이 곤란하거나 내용상 성별 구분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성별 구분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통계작성의 승인이 가능하도록 함.

나. 통계청장이 법원행정처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가족관계등록전산자료의 범위(제39조의2 신설)

통계청장이 법원행정처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를 가족관계, 국적, 혼인 상태, 이혼의 종류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함.

다. 인구동태통계 작성을 위한 조사의 범위 등(제39조의3 신설)

1) 인구동태통계를 작성하기 위하여 통계청장이 출생·사망 등 신고서와 그 첨부서류 등을 활용하여 인구동향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2) 인구동향조사의 범위는 출생·사망·혼인·이혼의 당사자에 관한 사항, 출생 당사자의 부모에 관한 사항, 출생·사망의 신고인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그 항목은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으로 정함.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통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6월 27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김동연

○대통령령 제28144호

통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통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통계작성지정기관의 직권 지정) ① 통계청장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통계작성지정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통계청장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지정한 통계작성지정기관에 대하여 통계작성에 필요한 예산·인력 및 기술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5조제4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작성의 대상이 자연인이면 성별 구분을 포함하되, 통계청장이 여성가족부장관과 협의하여 통계 방법상의 한계로 성별 구분이 곤란하거나 그 내용상 성별 구분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성별 구분을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9조의2 및 제39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조의2(가족관계등록전산자료의 범위) 통계청장은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법원행정처장에게 가족관계, 국적, 혼인 상태, 이혼의 종류 등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39조의3(인구동향조사의 범위 등) ① 통계청장은 법 제24조의2제4항에 따른 인구통태통계를 작성하기 위하여 출생·사망·혼인·이혼에 관한 조사(이하 “인구동향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법 제24조의2제4항제2호에서 “다른 법률에 따라 출생, 사망, 혼인, 이혼 등의 신고를 하면서 신고인이 작성하여 제출한 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인이 작성한 출생·사망

· 혼인·이혼 등에 관한 신고서

2. 제1호에 따른 신고서에 첨부한 서류

③ 인구동향조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

1. 출생·사망·혼인·이혼의 당사자에 관한 사항

2. 출생 당사자의 부모에 관한 사항

3. 출생·사망의 신고인에 관한 사항

④ 인구동향조사의 항목은 성명,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으로 한다.

⑤ 인구동향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검토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제5장에 제5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2조의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통계의 작성에 관한 사무

2.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협의를 거친 통계의 작성에 관한 사무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4조에 따른 행정자료 제공 요청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③ 통계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5조의3제1항에 따른 총조사에 관한 사무

2. 법 제24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공 요청에 관한 사무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9조의2 및 제39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7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주민등록법 시행령

[시행 2017.7.1.] [대통령령 제28150호, 2017.6.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민의 주민등록증 발급·재발급의 편의를 위하여, 종전에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거주지의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서만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거주지가 속한 시·군 또는 자치구 내의 모든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아니하고 인터넷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6월 27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 김부겸

◎대통령령 제28150호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 중 “신청하여야”를 “신청〔「전자정부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이하 “전자민원창구”라 한다)를 이용한 신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근무시간이 종료된 후에 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하여 주민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다음 정상근무일의 근무 종료시각까지 이를 철회할 수 있다.

제40조제4항 전단 중 “사진”을 “사진(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하여 주민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파일형태의 사진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주민등록증을 신청”을 “주민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으로 한다.

제56조제1항 중 “「전자정부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이하 “전자민원창구”라 한다)”를 “전자민원창구”로 한다.

별지 제29호서식의 제1호 발급안내 외의 부분 중 “우리 사무소 또는 주민센터”를 “주민등록지가 속한 시·군 또는 자치구 내의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로 한다.

별지 제30호서식 앞쪽, 별지 제32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3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민등록증 발급 사무처리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29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받은 사람에게도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호 중 “「주민등록법」 제7조제3항”을 “「주민등록법」 제7조의2 제1항”으로 한다.

② 검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제3호 중 “「주민등록법」 제7조제3항”을 “「주민등록법」 제7조의2제1항”으로 한다.

③ 기초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주민등록법」 제7조제3항”을 “「주민등록법」 제7조의2 제1항”으로 한다.

④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가목 중 “「주민등록법」 제7조제3항”을 “「주민등록법」 제7조의2 제1항”으로 한다.

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호 중 “「주민등록법」 제7조제3항”을 “「주민등록법」 제7조의2 제1항”으로 한다.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시행 2017.6.27.] [대통령령 제28152호, 2017.6.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수행하고 있던 경제사업을 농협경제지주회사의 업무로 이관함에 따라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임원 중 농업경제대표이사 및 축산경제대표이사를 폐지하고, 흩어져 있던 농협경제지주회사, 농협금융지주회사, 농협은행, 농협생명보험 및 농협손해보험 관련 조문을 모아 법률 규정의 체계를 정비하는 등의 내용으로 「농업협동조합법」이 개정됨에 따라, 농업경제대표이사 및 축산경제대표이사 관련 규정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6월 27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재수

○대통령령 제28152호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5 중 “법 제45조제3항(법 제107조 및 제1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법 제45조제4항(법 제107조 및 제1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5조제5항 단서(법 제107조 및 제1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법 제45조제6항 단서(법 제107조 및 제1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경영건전성기준”을 “경영건전성 기준”으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34조의2제4항 또는 법 제134조의4제2항제4호”를 “법 제161조의4제1항제4호 또는 법 제161조의11제2항제4호”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중앙회 농업경제대표이사 등의 자격요건)”을 “(중앙회 사업전담 대표이사등의 자격요건)”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호 후단 중 “법 제128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를 “중전의 법(2016년 12월 27일 법률 제1448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28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로 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농업경제대표이사, 축산경제대표이사, 상호금융대표이사”를 “상호금융대표이사”로 한다.

제15조의4 및 제15조의5를 각각 삭제한다.

제4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5조의2(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중앙회로 의제하는 사업) 법 제161조의4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별표 4의 사업을 말한다.

제46조제1항 중 “법 제134조의4제7항”을 “법 제161조의11제7항”으로 한다.

제51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앙회장(제7호의 경우에는 농협은행장을 포함한다)”을 “중앙회장, 농협경제지주회사의 대표이사(제3호에 한정한다) 및 농협은행장(제7호에 한정한다)”으로 한다.

별표 4의 제목 중 “제15조의4 관련”을 “제45조의2 관련”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4항 중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농업협동조합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로 한다.

②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1호라목 중 “조합 및 중앙회”를 “조합, 중앙회 및 농협경제지주회사”로 한다.

③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호 중 “중앙회”를 “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농업협동조합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중앙회”를 “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장”을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장 및 농협경제지주회사의 대표이사”로 한다.

④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4호 중 “조합 및 중앙회”를 “조합, 중앙회 및 농협경제지주회사”로 한다.

⑤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6항제1호의6 중 “「농업협동조합법」 제134조의2 또는 제134조의3”을 “「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의2 또는 제161조의10”으로 한다.

⑥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4호 중 “조합 및 그 중앙회”를 “조합, 중앙회 및 농협경제지주회사”로 한다.

⑦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2호 중 “「농업협동조합법」 제134조의5”를 “「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의12”로 한다.

⑧ 비료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2호 중 “조합 및 중앙회”를 “조합, 중앙회 및 농협경제지주회사”로 한다.

⑨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3호나목 중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농업협동조합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로 한다.

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5호 중 “「농업협동조합법」 제134조의4”를 “「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의11”로 한다.

⑪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6제3항제5호 중 “「농업협동조합법」 제134조의4”를 “「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의11”로 한다.

⑫ 양곡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농협경제지주회사”로 한다.

⑬ 정부기업예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농협경제지주회사”로 한다.

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6조의28제2항제2호 중 “「농업협동조합법」 제134조의2제3항”을 “「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의4제1항제6호”로 한다.

⑮ 초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제2항 중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이하 “기금관리자”라 한다)”을 “농협경제지주회사의 대표이사(이하 “기금관리자”라 한다)”로 한다.

⑯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1호 중 “「농업협동조합법」 제134조의5”를 “「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의12”로 한다.

제15조제3항제7호라목 중 “「농업협동조합법」 제134조의4 및 제134조의5”를 “「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의11 및 제161조의12”로 한다.

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1항 중 “같은 법 제134조의2”를 “같은 법 제161조의2”로 한다.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7.6.28.] [대통령령 제28162호, 2017.6.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우리사주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비상장법인으로서 일정 규모 이상에 해당하는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로 하여금 우리사주를 의무적으로 환매수하도록 하되, 경영악화 등의 사유로 환매수를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환매수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분할하여 환매수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근로복지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4498호, 2016. 12. 27. 공포, 2017. 6. 28. 시행)됨에 따라, 우리사주의 의무적 환매수 대상이 되는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규모, 환매수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분할하여 환매수할 수 있는 사유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우리사주제도 운영과 관련된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우리사주를 의무적으로 환매수하여야 하는 우리사주 실시회사의 범위 등(제27조의2제1항·제2항 및 제4항 신설)

1) 의무적으로 우리사주를 환매수하여야 하는 회사의 범위를 비상장법인으로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부의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근로자 수가 300명 이상이고,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인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로 정함.

2) 우리사주조합원이 사망하거나 장애등급 제7급 이상인 장애로 퇴직한 경우 등에는 6년의 추가 예탁기간과 관계없이 해당 우리사주 실시회사에 우리사주의

환매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나. 환매수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분할하여 환매수할 수 있는 사유 등
(제27조의2제6항부터 제8항까지 신설)

1) 의무적으로 우리사주를 환매수하여야 하는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가 환매수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유를 해당 회사가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해당 회사의 직전 연도 결산일을 기준으로 배당 가능이익이 없는 경우 또는 해당 회사의 주권이 증권시장에 상장된 경우 등으로 정함.

2) 의무적으로 우리사주를 환매수하여야 하는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가 분할하여 환매수할 수 있는 사유를 해당 회사의 주된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1개월 이상 중단되거나 환매수 요청 금액이 직전 연도의 결산일을 기준으로 배당가능이익의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로 정함.

3)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가 분할하여 환매수하는 도중에 환매수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회사는 환매수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하고, 환매수 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매수를 요청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알리도록 함.

4) 의무적으로 우리사주를 환매수하여야 하는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가 환매수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분할하여 환매수하려는 경우에는 환매수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매수를 요청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알리도록 함.

다. 우리사주조합을 통한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인수 방법(제29조의2 신설)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한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인수로 인하여 취득한 우리사주의 금액과 관계없이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인수 방법을 우리사주조합이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취득하여 최대주주가 되는 방법

으로 인수하는 경우로 정함.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6월 27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이기권

○대통령령 제28162호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가목에 따른 최대주주.
이 경우 “금융회사”는 “회사”로 본다.

제10조제2항제2호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1호가목부터 자목까지”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항제1호가목부터 사목까지”로 한다.

제24조의2부터 제24조의6까지를 각각 제24조의3부터 제24조의7까지로 하고,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수탁기관의 업무) 법 제43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상시근로자 수가 50명 미만인 주식회사의 조합 설립 지원
2. 상시근로자 수가 50명 미만인 주식회사에 설립된 조합의 우리사주 예탁 및 인출 업무의 지원
3. 비상장법인의 우리사주 매매 정보의 제공
4. 우리사주제도 도입을 위한 교육·홍보 및 자문

제24조의7(중전의 제24조의6)제3호 중 “제24조의5 각 호”를 “제24조의6 각 호”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법 제45조제3항”을 “법 제45조제2항”으로 한다.

제27조의2 및 제29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2(비상장법인의 의무적 환매수) ① 법 제4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비상장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란 비상장법인으로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이하 이 조에서 “의무적 환매수 대상 회사”라 한다)를 말한다.

② 법 제4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조합원이 사망한 경우
2. 조합원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장애등급 제7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로 퇴직한 경우
3. 조합원이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라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해고된 경우

③ 법 제45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우선배정에 의한 취득

2. 법 제39조에 따른 우리사주매수선택권 부여에 의한 취득

3. 「상법」 제418조제2항에 따른 주주 외의 자에 대한 신주배정에 의한 취득

④ 법 제45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6년을 말한다.

⑤ 법 제45조의2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의무적 환매수 대상 회사의 신용상태에 대한 평가를 의뢰할 신용평가회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신용평가회사를 말한다)를 말한다.

⑥ 법 제45조의2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를 말한다.

1. 환매수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유

가. 의무적 환매수 대상 회사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나. 의무적 환매수 대상 회사의 직전 연도의 결산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간 연속하여 매출액이 100분의 30 이상씩 감소한 경우

다. 의무적 환매수 대상 회사의 직전 연도의 결산일을 기준으로 「상법」 제462조에 따른 배당가능이익이 없는 경우

라. 의무적 환매수 대상 회사의 직전 연도의 결산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연속하여 이자비용 대비 영업이익의 비율이 100퍼센트 미만이고,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이 적자인 경우

마. 의무적 환매수 대상 회사의 직전 연도의 결산일을 기준으로 제5항에 따른 신용평가회사로부터 투자부적격 등급으로 평가받은 경우

바. 의무적 환매수 대상 회사의 주권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된 경우

2. 분할하여 환매수하는 사유

가. 의무적 환매수 대상 회사 사업의 주된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1개월 이상 중단된 경우

나. 환매수 요청 금액이 의무적 환매수 대상 회사의 직전 연도의 결산일을 기준으로 「상법」 제462조에 따른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는 경우

⑦ 의무적 환매수 대상 회사는 제6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분할하여 환매수하는 도중에 같은 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환매수를 중단할 수 있다.

⑧ 의무적 환매수 대상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45조의2제1항에 따라 환매수 요청을 받은 날 또는 이 조 제7항에 따라 환매수 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매수를 요청한 조합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1.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환매수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분할하여 환매수하려는 경우

2. 제7항에 따라 환매수를 중단하려는 경우

제29조의2(조합의 회사 인수) 법 제4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해당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를 인수한 경우”란 조합이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취득하여 최대주주가 되는 방법으로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를 인수한 경우를 말한다.

부 칙

이 영은 2017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시행 2017.6.22.] [대통령령 제28126호, 2017.6.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원룸, 다가구주택 등의 소유자 및 임차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기초조사와 소유자·임차인의 의견 수렴 및 이의신청 등의 절차를 거쳐 상세주소를 부여·변경·폐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로명주소법」이 개정(법률 제14616호, 2017. 3. 21. 공포, 6. 22. 시행)됨에 따라, 직권으로 상세주소를 부여·변경·폐지하기 위한 기초조사, 소유자와 임차인에 대한 통보 및 의견수렴, 소유자 및 임차인의 이의가 있는 경우의 상세주소 결정 절차 등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직권으로 상세주소 부여·변경·폐지하기 위한 기초조사(제11조의12제2항 제1호 신설)

시장·군수·구청장은 직권으로 상세주소를 부여·변경·폐지하려는 경우 건축물대장의 등록 여부와 등록사항, 상세주소 적용범위 등을 포함하여 상세주소 부여·변경·폐지 등을 위한 기초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나. 직권 상세주소 부여·변경·폐지에 대한 의견수렴 및 이의신청 등(제11조의12제2항제2호 및 제4호 등 신설)

1) 기초조사를 마친 시장·군수·구청장은 상세주소를 부여·변경·폐지하려는 건물 등에서 상세주소가 적용될 동·층·호의 공간 등 적용범위, 상세주소의 결정 절차 등을 소유자와 임차인에게 통보하여 의견을 수렴하도록 함.

2) 직권에 의한 상세주소의 부여·변경·폐지에 대하여 소유자 또는 임차인의 의견이 있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그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하면서 이의 신청 기회를 부여하고, 소유자 또는 임차인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시·군·구 도로명주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세주소의 부여·변경·폐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

다. 직권으로 부여·변경한 상세주소의 고지·고시(제11조의12제3항 및 제4항 신설)

시장·군수·구청장은 도로명주소대장에 상세주소의 부여·변경 사항을 기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소유자와 임차인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송달의 방법으로 고지하도록 하고, 고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보 등을 이용하여 상세주소의 부여·변경 사항을 고시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6월 20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 김부겸

○대통령령 제28126호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12제1항제3호 중 “적용범위”를 “적용범위(상세주소를 부여·변경·

폐지하려는 건물등에서 상세주소가 적용될 동·층·호의 공간을 말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등은 법 제8조의4제3항에 따라 상세주소를 부여·변경·폐지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한다.

1. 시장등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에 대한 기초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시장등은 제1호에 따른 기초조사가 끝난 후 소유자와 임차인에게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통보하여 상세주소 부여·변경·폐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등은 30일 이상의 의견제출 기간을 주어야 한다.

가. 제1항제3호의 사항

나. 상세주소의 활용 방법

다. 상세주소의 결정 절차

라. 의견제출 기간 및 방법

마. 그 밖에 시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시장등은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의 의견제출 기간에 제출된 의견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상세주소의 부여·변경·폐지를 결정하고 의견제출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결정내용을 도로명주소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4. 시장등은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의 의견제출 기간에 제출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의견을 검토하여 의견제출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소유자와 임차인에게 검토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등은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유자와 임차인에게 이의신청 기회를 주어야 한다.

5. 시장등은 제4호 후단의 이의신청 기간에 제출된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상세주소의 부여·변경·폐지를 결정하고 이의신청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결정내용을 도로명주소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6. 시장등은 제4호 후단의 이의신청 기간에 제출된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 사항에 대한 반영 여부와 상세

주소의 부여·변경·폐지에 관한 사항을 시·군·구 도로명주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7. 시장등은 제6호에 따라 상세주소의 부여·변경·폐지를 결정한 다음 날부터 14일 이내에 결정내용을 도로명주소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③ 시장등은 제2항제3호·제5호 및 제7호에 따라 상세주소를 부여·변경한 경우에는 도로명주소대장에 상세주소의 부여·변경 사항을 기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소유자와 임차인에게 상세주소의 부여·변경 사실을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등은 소유자와 임차인에게 상세주소 부여·변경 내용을 적은 서면을 직접 방문하여 교부하거나 우편으로 송달하여야 하며, 고지가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에는 공시송달을 하여야 한다.

④ 시장등은 제3항에 따라 상세주소의 부여·변경 사실을 고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보등을 이용하여 부여·변경된 상세주소와 상세주소의 부여·변경일을 고지하여야 한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직권에 의한 상세주소 부여·변경의 고지·고시에 대해서는 제23조제3항·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제11조의12제6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제1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개발사업시행자는”을 “개발사업 시행자는 그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도로명주소안내시설의 설치(교체·철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필요한 경우”로, “때에는”을 “때”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비용”을 각각 “설치비”로 한다.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도로명주소”를 “도로명주소(법 제8조의 4제3항에 따라 직권으로 부여·변경한 상세주소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한다.

제24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법 제8조의4”를 각각 “법 제8조의4제1항”으로 한다.

제26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법 제8조의4제1항”을 “법 제8조의4”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2017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